

2021년 하반기 도 및 시·군

건설현장 민·관 합동 기동감사 결과보고



전라남도

JeollaNamdo

[감사관실]

- 2021년 하반기 도 및 시·군 - 건설현장 민·관 합동 기동감사 결과보고

건설시공 정착과 현장 관계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실시한 「2021년 건설현장 민·관 합동 기동감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12. 6.(월) ~ 12. 24.(금) / 15일
- 감사대상 : 863개소 중 24개 현장 선정(도 4, 시·군 17, 민간보조 3)
 - 5억원 이상 사업 863개소(도 67, 시·군·민간 796) 중 24개 현장 선정
 - * 24개 현장 : 도로 4, 하천 4, 건축 5, 상·하수도 4, 해양 2, 택지 및 관광 등 5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등 20명(도 5, 민간전문 감사관 15)
 - 총 괄 : 기술감사팀장 김광호
 - 반 원 : 2개반 6~7명(각 반별 : 감사관 2~3, 민간전문 감사관 22명 중 1~2)
- 민간전문 감사관 운영
 - 감사기간 내 활동 가능한 민간전문 감사관을 전공 분야별 선정
 - ※ 민간전문 감사관 : 전체 22명 중 분야별 15명 참여(토목 10, 건축 3, 환경 1, 조경 1)

II. 감사 중점사항

- (설계도서) 설계기준, 품질·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적정 여부
- (현장시공) 주요 구조물의 부실 및 조잡시공 여부
- (현장관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현장대리인 등 적정배치 여부
- (보 조 금) 보조사업 관리, 설계도서 및 현장시공 적정 여부 등
- (청렴도 향상)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당부 안내

Ⅲ. 감사결과

○ 총 평

- 도(道), 시·군 및 전남개발공사에서 시행 중인 5억 원 이상 22개 공공사업과 3억 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2개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전문 감사관」과 합동으로 건설공사 기동감사를 실시하여
- 견실시공 정착과 현장 관계자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사장 품질·안전관리 적정여부 및 부당한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중점점검 하였으며, 특히 공사과정에서 부실 및 조잡시공이 없도록 예방·개선하며 예산 낭비사례 없도록 하였음

○ 처분 요구사항

(단위 : 건, 명, 백만원)

총계 (가:나)	신분상 처분			행정상 처분										
	합계 (가)	징계	훈계	합계 (나 =A:D)	시 정							주의 (B)	개선 (C)	통보 (D)
					계 (A =a+b)	재정상 처분(백만원)					재정상 처분외 시정 (b)			
					소계 (a)	회수	감액	재시공	보완 시공					
38	2 (2명)	- -	2 (2명)	36	22 (619)	22 (618)	1 (5)	18 (598)	1 (15)	- (-)	2 (1)	13	-	1

Ⅳ.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① [강진군] ○○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강진군(안전재난교통과)은 '21. 12. 6. 감사일 현재 현장 내 설치된 가설방음벽(W=2.0m, H=3.0m) 일부 구간(L=130m)에서 받침 지주가 설계 근입기초(H=1.5m) 보다 적게(L=0.8m) 시공되어 재시공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또한 안전재난교통과는 현장 내 임시침사지 6개소 중 1개소 미시공, 건설현장 근퇴단말기 2개소 중 1개소 등 미설치로 1,630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로 예산낭비 초래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등에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착공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등 품질시험자격을 갖춘 적격한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재난교통과)은 '21. 11. 25.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서를 품질관리 기술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승인 통보하였으며, '21. 11. 22. 교육 이수한 품질관리 기술자로 변경된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도 '21. 12. 6. 감사일 현재까지 미승인
-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건설공사에 작업발판(비계)을 설치할 때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으로 설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재난교통과)은 위 공사의 작업발판(비계)을 일반 재래식 강관비계(25,522천원)로 설계 완료하여 공사 추진

☞ 가설방음벽 L=130m을 재시공하고 과다 계상된 사업비 1,630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품질시험계획 승인 철저 및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도록 “주의요구”

② [도 자연재난과] ○○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전남도(자연재난과)는 '21. 12. 7. 감사일 현재 새마을교의 거푸집이 합판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유로폼으로 시공되고 있어 공사비 2,900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하여 예산낭비 초래
- 「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중복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하고,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5조에 지반조사 결과를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에 등록 관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도(자연재난과)는 '21. 12. 7. 감사일 현재 “○○천 새마을교 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2건의 실시설계 및 지반조사용역을 완료 하였는데도 시스템에 미등록하는 등 관리 소홀
- 그로 인하여 타 기관의 건설기술용역 적격자 선정 시 왜곡된 결과 초래 및 시추를 통해 조사된 지반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반정보 공유의 활성화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결과 초래

☞ 과다 계상된 사업비 2,900만원을 감액하고 미등록된 실시설계 용역 및 지반조사 용역에 대하여 시스템에 등재하도록 “시정요구”

③ [고흥군] ○○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고흥군(건설과)은 '21. 12. 8. 감사일 현재 현장 내 토공 및 도로 포장면 시공 확인을 위해 설치한 기준틀 219개소(수평 36, 비탈 183) 중 40개소(수평 5, 비탈 35)가 망실되어 재설치 등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또한 암거(2.0×3.0×2연) 작업발판(비계) 미설치 및 사토운반 거리(L=5.0km →L=4.4km) 미정산으로 817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로 예산낭비 초래

☞ 망실된 기준틀 40개소 재설치하고 과다 계상된 사업비 817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4 [완도군] ○○ ○○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완도군(안전건설과)은 '20. 6월부터 '22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 ○○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에서 파라펫 기초 버림콘크리트 수량(85m³)이 누락되어 1,2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 필요한데도 미조치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되는 구조물 완공 여부에 대하여 불확실 초래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는 적정한 시험실을 설치하고 기술인을 배치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20. 7월부터 '21. 12. 9. 감사일 현재까지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 중 품질관리 기술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하여 교육을 미이수한 품질관리자의 현장 품질관리로 공사 품질에 대한 신뢰성 저해 초래

- ☞ 설계도서에 누락된 일부 공정에 대한 사업비 1,2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되는 구조물이 완성되도록 **“통보”**
- ☞ 품질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확인 등 현장 품질시험계획 승인을 철저히하도록 **“주의요구”**

5 [장성군]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장성군(안전건설과)은 '20. 1월부터 '21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축제공 및 배수통관의 콤팩트 다짐 미 실시 등 과다계상된 3,064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하여 예산낭비 초래
- 「소하천정비법」 제7조 등에 사전설계검토 승인 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사업비 10%미만)의 시행계획 변경 시 시·도지사 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21. 12. 13. 감사일 현재 민원처리 등을 위한 전석쌓기 등을 추가(사업비 8% 증)하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시·도지사의 시행계획 변경 미승인
- 그로 인하여 추가 신규공정에 대한 적정성 등 검토 생략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기회 상실

☞ 과다 계상된 사업비 3,064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경미한 시행계획 변경 시 시·도지사의 시행계획 변경 승인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주의요구”

6 [道 도로교통과]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전남도(도로교통과)는 '15. 12월부터 '22. 8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서 현지여건 변화에 따른 오탐방지망 일부 미설치 등 3,106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로 예산낭비 초래

☞ 과다 계상된 사업비 3,106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7 [구례군] 지방도 000호선 수해복구공사 추진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구례군(건설과)은 '21. 6월부터 '22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지방도 000호선 수해복구공사”에서 가설 사무소 및 시험실 일부 미설치 등으로 1,697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하여 예산낭비 초래

☞ 과다 계상된 사업비 1,697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8 [영광군] 000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영광군(상하수도사업소)은 '18. 6월부터 '2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000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시공상세도 미작성 및 순환골재 운반거리 정산에 따른 3,597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하여 예산낭비 초래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 등에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공사관리관,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 공사관리관은 '18. 6월부터 '21. 12. 17. 감사일 현재까지 현장에서 실시한 합동 점검 12회 중 7회를 참석하지 않는 등 건설공사 총괄업무 소홀

☞ 과다 계상된 사업비 3,597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분기별 현장 시공상태 확인 등을 위한 공사관리관, 현장대리인, 기술 지원기술인 등이 합동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9 [보성군]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어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보성군(안전건설과)은 '18. 6월부터 '2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 기준틀 일부 망실(25개소)에 대한 재설치 미흡 및 과다 계상된 시공상세도 등 정산에 따른 4,191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하여 예산낭비 초래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는 적정한 시험실을 설치하고 기술인을 배치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18. 6월부터 '21. 12. 20. 감사일 현재까지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 중 품질관리 기술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하여 교육을 미이수한 품질관리자의 현장 품질관리로 공사 품질에 대한 신뢰성 저해 초래

☞ 망실된 기준틀 25개소 재설치하고 과다 계상된 사업비 4,191만원을 감액 하도록 “시정요구”

☞ 품질관리자 교육이수 확인 등 현장 품질시험계획 검토 및 승인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10 [광양시] ○○○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부적정

□ 광양시는 2019. 3. 7. ○○과 “광양시 어촌뉴딜300사업”을 10,000백만원에 위탁 계약하고, 2021. 12. 21. 감사일 현재까지 ○○○ 어촌뉴딜300사업을 시행

1. 공사비 회수 및 감액조치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어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62조에 공사감독자는 공사 준공시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계약대로 시공 완료되었는지 여부 확인
 - 그런데 위 ○○은 '20. 6. 18. 부터 '21. 11. 17. 사업 준공한 “○○○ 어촌뉴딜300사업(잔교 및 기타공사)”에서 스페이스 미설치분 483만원을 미회수하고,
'20년 12월부터 '21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추진 중인 “○○○ 어촌뉴딜300사업(조경 및 기타공사)”에서 경계석 기초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미시공 등 과다 계상된 1,352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로 예산 낭비 초래

2. 공사 품질관리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및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적정한 시험실을 배치하고 기술인을 배치하는 품질시험계획 수립하고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은 '20. 12월부터 '21. 12. 21. 감사일 현재까지 3개사업(조경 및 기타공사, 건축-기계, 산업전기)에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공사 품질에 대한 신뢰성 저해 우려

3. 시공상세도 승인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검토 후 승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 어촌뉴딜300사업(잔교 및 기타공사)”에 시공상세도 68장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고 ‘20. 11. 17. 최종 준공 처리하여 공사 품질 및 안전에 대한 신뢰 저해 우려

☞ 과다 계상된 사업비 1,835만 원을 회수·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현장 품질시험계획 및 시공상세도 확인·검토 후 승인 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11 [순천시] ○○사업 기반시설정비 토목공사 추진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순천시(미래산업과)는 ‘20. 6월부터 ‘22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 기반시설정비 토목공사”에서 은행나무 등 식재 시 복합비료 미사용 등에 따른 6,290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로 예산낭비 초래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는 적정한 시험실·기술인 배치하여 품질시험계획 수립하고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도록 규정하고, 품질시험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승인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미래산업과)는 ‘20. 8월부터 ‘21. 10월까지 건설사업자가 2회에 걸쳐 품질기술자 교체를 위해 변경된 품질시험계획을 제출했는데 ‘21. 12. 22. 감사일 현재까지 품질시험계획 변경 승인 미조치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 등에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공사관리관,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미래산업과) 공사관리관은 '21. 6월부터 '21. 12. 22. 감사일 현재까지 현장에서 실시한 현장 합동점검 2회 모두를 참석하지 않아 건설공사 총괄 업무 소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등에 도로상의 노면 표시용 도료를 설치 시 시공 직후 1주일 후에 재귀 반사 성능검사 실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미래산업과)는 '21. 12. 10. 차선도색 후 '21. 12. 22. 감사일 현재까지 재귀반사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채 '21. 12. 21.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차선도색공사에 따른 재귀 반사 성능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야간이나 우천 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증가될 우려

- ☞ 품질시험계획 미승인, 재귀반사 성능시험 미실시 등 현장 관리를 총괄적으로 소홀히 한 담당팀장에게 “훈계요구”
- ☞ 과다 계상된 사업비 6,290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 현장 품질시험계획 검토·승인 및 공사관리관은 현장시공 상태 확인을 위한 분기별 합동점검에 참석하는 등 건설공사 총괄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12 [道 해운항만과] ○○○항 물양장 개축공사 추진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전남도(해운항만과)는 '19. 12월부터 '22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항 물양장 개축공사”에서 오탉방지망 철거에 따른 관리비 미정산 등에 따른 4,899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로 예산낭비 우려

- ☞ 과다 계상된 사업비 4,899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13 [목포시] ○○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 등에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공사관리관,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고 발주청 소속 공사관리관은 기성 및 준공검사를 입회하고 입회확인서를 작성하여 적정하게 검사를 실시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목포시(교육체육과) 공사관리관은 '19. 12월부터 '21. 12. 6. 감사일 현재까지 현장에서 실시한 현장 합동점검 6회 중 1회를 참석하지 않았고, 기성·준공검사 6회 중 1회를 입회하지 않아 건설공사 총괄 업무 소홀

앞으로 현장 시공상태에 대한 합동점검 수행과 기성·준공검사 입회 등의 공사관리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14 [곡성군] ○○면 ○○○○○○센터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곡성군(안전건설과)는 '21. 1월부터 '22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면 ○○○○○○센터 건축공사”에서 가설사무소 일부 미설치 등으로 790만원에 대하여 감액 미조치로 예산 낭비 초래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1.1. 등에 콘크리트의 타설은 결합부가 없도록 타설하여야 하고, 다짐은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짐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는 '21. 1월부터 '22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위 사업장에서 벽체 및 기둥 등에서 재료분리 현상이 발생하여 구조체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데도 구조 안전검토 및 보완 시공 미조치



- 그로 인하여 건축공사 현장의 부실시공 예방을 소홀히 하는 등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결과 초래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공사는 적절한 시험실과 기술인을 배치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승인받도록 되어 있고, 배치된 기술인이 하루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반드시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

※ 발주처의 승낙을 받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21. 1월부터 '21. 12. 7. 감사일 현재까지 위 사업장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을 미승인하였고, 시험 및 검사장비를 비치하지 않았으며, 상주 건설기술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품질관리 업무수행 부적정
- 그로 인하여 건축공사의 품질을 신뢰하지 못하는 등 부실시공 우려 발생

- ☞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을 검토·승인하지 않는 등 건축공사 관련 업무를 소홀히 관리한 現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상주하지 않은 기술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을 검토·승인하며, 과다 반영된 공사비 790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15 [담양군] ○○도로 확장공사 추진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어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담양군(도시디자인과)는 '19. 12월부터 '22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도로 확장사업”에서 L형 측구 기초 콘크리트 타설 시 유로폼 미설치, 사토 운반거리 미정산 등으로 4,829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로 예산 낭비 초래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 등에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공사관리관,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도시디자인과) 공사관리관은 '20. 6월부터 '21. 12. 8. 감사일 현재까지 현장에서 실시한 합동 점검 6회 중 6회 모두 참석하지 않아 건설공사 총괄업무 소홀

☞ 과다 계상된 공사비 4,829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분기별 현장시공 상태 합동 점검 수행 등 공사관리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16 [장흥군]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어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장흥군(수도사업소)는 '19. 7월부터 '22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처리장 시스템 동바리 미설치 등으로 2,092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로 예산 낭비 초래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 등에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공사관리관,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고 발주청 소속 직원은 기성 및 준공검사를 입회하여 공사관리관 입회 확인서를 작성하여 적정하게 검사를 실시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도사업소) 공사관리관은 '20. 7월부터 '21. 12. 10. 감사일 현재까지 현장 합동점검을 분기별 각 1회씩 총 7회를 한번도 실시하여야 하는데 실시하지 않고 월 1회 실시하는 정기 점검으로 대체 추진하였고, 기성·준공검사 7회 중 7회를 모두 입회하지 않아 건설공사 총괄 업무 소홀

☞ 과다 계상된 사업비 2,092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현장시공 상태 합동 점검 수행 및 기성·준공검사에 입회하는 등 공사관리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17 [화순군]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화순군(상하수도사업소)은 '18. 9월부터 '22. 4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풍화암 절토사면에 식생이 불가능한 동백나무 등 260주의 식재를 반영하여 1,354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로 예산 낭비 초래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2조에 발주청 소속 직원은 기성 및 준공검사를 입회하여 공사관리관 입회 확인서를 작성하여 적정하게 검사를 실시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 공사관리관은 '18. 9월부터 '21. 12. 14. 감사일 현재까지 실시한 기성 및 준공검사 11회 중 4회를 입회하지 않아 건설공사 총괄 업무 소홀
- 위 공사의 「공사시방서」 1.2.5 등에 손상될 수 있는 제품은 불투수성 덮개로 덮어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위험한 장소에는 금지, 경고, 지시를 위한 안전표지와 비상시 조치 안내 표지를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 시공자는 PE다중벽관을 투수성 덮개로 덮은 채 보관하고 있고, 높이 4.5m의 조정조시설은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표지를 미 부착
 - 그 결과 PE다중벽관 변형 및 손상의 우려가 있고, 설치된 조정조시설은 안전표지가 부착되지 않아 안전사고 등 발생 우려

☞ 과다 계상된 사업비 1,354만원을 감액하고, 손상될 수 있는 제품은 불투수성 덮개 설치 및 조정조시설은 안전표지 등을 부착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기성·준공검사 시 입회하는 등 공사관리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18 [해남군]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어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해남군(상하수도사업소)은 '19. 12월부터 '22.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가시설 계측 미 실시로 계측관리비 4,171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로 예산 낭비 초래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 등에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공사관리관,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고 발주청 소속 직원은 기성 및 준공검사를 입회하여 공사관리관 입회 확인서를 작성하여 적정하게 검사를 실시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 공사관리관은 '19. 12월부터 '21.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현장에서 실시한 현장 합동점검 7회 중 7회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기성·준공검사 5회 중 4회를 입회하지 않아 건설공사 총괄 업무 소홀
- 위 공사의 「공사시방서」 1.5. 등에 시공자는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재를 보관하고, 공사구역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공사의 시공자는 건설자재 등을 정리 정돈하지 않고, 현장 주변을 청결하지 않은 채로 보관
 - 그 결과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등이 정리 정돈되지 않고 널브러져 있어 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등 발생 우려

☞ 과다 계상된 사업비 4,171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현장시공 상태 합동 점검 수행 및 기성·준공검사 입회하는 등 공사관리관 업무와 공사구역 내 자재 정리 정돈 등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19 [道 도로관리사업소] ○○ 지방도 재해복구사업 추진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전남도(도로관리사업소)는 '21. 8월부터 '22. 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 지방도 재해복구사업”에서 역T형 옹벽 시공 시 강관 비계 일부 미설치 등으로 817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로 예산 낭비 초래

☞ 과다 계상된 사업비 817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20 [함평군] ○○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함평군(안전건설과)은 '18. 1월부터 '25. 4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 설치사업”에서 준공 표지석 과다 계상 등으로 4,970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로 예산 낭비 초래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 등에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공사관리관,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고 발주청 소속 직원은 기성 및 준공검사를 입회하여 공사관리관 입회 확인서를 작성하여 적정하게 검사를 실시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 공사관리관은 '18. 1월부터 '21. 12. 20. 감사일 현재까지 현장에서 실시한 현장 합동점검 9회 중 9회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기성·준공검사 6회 중 6회 모두 입회하지 않아 건설공사 총괄 업무 소홀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등에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등 품질시험자격을 갖춘 적절한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21. 2. 17.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품질관리자 변경 신고 시 품질관리기술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승인 통보하였으며, '21. 11. 30. 품질관리 기술자가 퇴사하였는데도 '21. 12. 20. 감사일 현재까지 변경 신고 등이 없음
 - 그로 인하여 품질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품질관리 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으로 공사의 품질을 신뢰하지 못할 우려 발생

☞ 품질관리기술자 변경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과다 계상된 사업비 4,970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현장시공 상태 합동 점검 수행 및 기성·준공검사 시 입회하는 등 공사관리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21 [여수시] ○○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여수시(관광과)는 '19. 9부터 '22. 9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 개발사업"에서 세륜세차시설 미 설치 기간 4개월 미정산 등으로 738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로 예산 낭비 초래

☞ 과다 계상된 사업비 738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22 [전남개발공사] ○○ 연구시설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전남개발공사(건축안전사업처)는 '21. 5부터 '22. 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 연구시설 건립공사”에서 역L형 옹벽 기초의 전단키 시공 시 유로폼 미설치 등으로 361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로 예산 낭비 초래
-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옥상 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는 높이 120c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공사(건축사업안전처)는 '21. 12. 22. 감사일 현재 연구관리동 옥상 난간을 50cm 높이로 시공하여 규정한 높이보다 70cm 낮게 시공
 - 그로 인하여 건축법령에 위반되게 옥상 난간을 설치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 초래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6.3.5.에 철골공사 완공 후 도장이 필요한 부재에 생긴 녹을 압축공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거한 후 도막 공사를 시행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공사(건축사업안전처)는 '21. 2. 22. 감사일 현재 에너지동 건축공사의 감독을 소홀히 하여 철골 앙카볼트에 녹이 발생하여 방치되어 건축물의 구조체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데도 구조 안전 검토 및 보완 시공 등의 미조치
 - 그로 인하여 건축공사 현장의 부실시공 예방을 소홀히 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품질의 저하가 우려

☞ 과다 계상된 공사비 361만원을 감액하고, 연구관리동 옥상광장에 높이 120c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설계 변경하며, 에너지동의 녹이 발생한 철골 앙카볼트는 녹을 제거 후 적정한 도막공사를 시행하도록 “시정요구”

23 [장성군] ○○도로 개설사업(민간보조) 추진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장성군(문화관광과)은 '20. 12월부터 '21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 개설사업”에서 흙콘크리트 포장 일부 구간에서 지하 매설물 등 현장여건 변화로 두께를 조정(20cm→15cm) 시공하여 사업비 216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로 예산낭비 초래

☞ 과다 계상된 사업비 216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24 (해남군) ○○ 거점단지 조성사업(민간보조) 추진 부적정

□ 해남군은 2018. 7. 30. 보조사업자 ○○에게 보조금 15,000백만원(국비 7,500
군비 4,500 자담 3,000)을 지원하여, ○○에서 2020. 12. 29.부터 2021. 12.
13. 감사일 현재까지 “○○ 거점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1. 보조사업 관리 부적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에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 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성을 검증 받아, 회계연도가 완료 후 2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해양수산물과)은 '19. 4월 ○○에 보조금 4,200백만원을 교부한 후 실적보고서를 '18년과 '19년에는 받지 않았고 '21년에는 감사인에게 적정성을 검증받지 않고 7월에 제출받음
 - 그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할 기회 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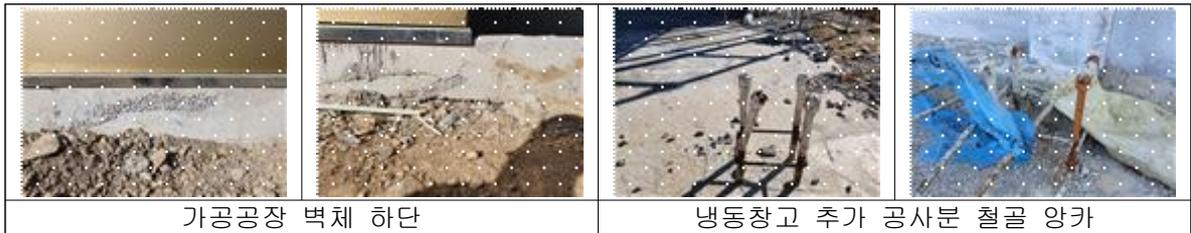
2. 산업단지 입주계약 업무 추진 부적정

- 「산업집적법」 제2조 등에 해당 사업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허가 여부를 협의하여 입주계약 승인을 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산업과)은 2019. 1. 7. ○○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는 중 다량의 폐수 배출에 따른 인가·허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입주계약을 승인하여 설치대상 여부 검토 기회 상실

3.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철골공사 시공 부적정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1.1. 등에 콘크리트의 타설은 결함부가 없도록 타설하여야 하고, 다짐은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짐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표준 시방서 6.3.5.에 철골공사 완공 후 도장이 필요한 부재에 생긴 녹을 압축공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거한 후 도막 공사를 시행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보조사업자는 '20. 12월부터 '21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위 사업장에서 재료분리 및 철골 양카볼트에 녹이 발생하여 구조체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데도 구조 안전검토 및 보완 시공 미조치



- 그로 인하여 건축공사 현장의 부실시공 예방을 소홀히 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품질의 저하가 우려

4.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등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어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은 '20. 12.월부터 '21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 거점단지 조성사업”에서 지반 치환공사 골재 다짐 등을 실시하지 않아 2,757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로 예산 낭비 초래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공사는 적절한 시험실·기술인 배치하여 품질시험계획 수립하고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되어 있고, 배치된 기술인이 하루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반드시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

※ 발주처의 승낙을 받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 그런데 ○○은 '21. 12월부터 '21. 12. 13. 감사일 현재까지 위 사업장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을 미승인하고, 레미콘 등 품질 시험을 시행하지 않아 공사비 2,922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또한 현장에 배치된 품질기술인은 기본·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현장에 상주하지도 않는 등 품질관리 업무수행 부적정
- 그로 인하여 부실시공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품질시험계획 업무를 태만히 하여 공사의 품질을 신뢰하지 못할 우려 발생
- 위 공사의 「건축시방서」 A17010 등에 건설폐기물은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고,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는 정리정돈,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공사의 시공자는 건설폐기물에 덮개를 씌우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고, 사용하는 자재의 정리정돈을 하지 않은 채 보관
- 그 결과 건설폐기물은 바람이 불면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등 주변 환경 오염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등이 정리 정돈 되지 않고 널브러져 있어 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등 발생 우려

☞ 보조금 집행 적정성 및 환경관련 배출시설 설치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재료 분리가 발생한 구조체 등은 보완 시공하며, 과다 계상된 사업비 및 미시행 품질시험비 등 사업비 5,679만원을 감액 하고, 미상주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을 검토·승인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공사 중에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덮개를 설치하고 사용자재는 정리·정돈 등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목 차

① (강진군) ○○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주의)	28
② (도 자연재난과) ○○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34
③ (고흥군) ○○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38
④ (완도군) ○○ ○○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통보)	41
⑤ (장성군)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주의)	44
⑥ (도 도로교통과)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47
⑦ (구례군) 지방도 ○○○호선 수해복구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50
⑧ (영광군) ○○○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주의)	53
⑨ (보성군)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주의)	57
⑩ (광양시) ○○○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주의)	61
⑪ (순천시) ○○사업 기반시설정비 토목공사 추진 부적정(훈계, 시정, 주의) ..	66
⑫ (도 해운항만과) ○○○항 물양장 개축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74
⑬ (목포시) ○○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주의)	77

- ⑭ (곡성군) ○○면 ○○○○○○센터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훈계, 시정) 80
- ⑮ (담양군) ○○도로 확장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주의) 87
- ⑯ (장흥군)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주의) .. 91
- ⑰ (화순군)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주의) 96
- ⑱ (해남군)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주의) ... 100
- ⑲ (도 도로관리사업소) ○○ 지방도 재해복구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 105
- ⑳ (함평군) ○○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주의) 110
- ㉑ (여수시) ○○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116
- ㉒ (전남개발공사) ○○ 연구시설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119
- ㉓ (장성 - 민간보조) ○○도로 개설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주의) 124
- ㉔ (해남 - 민간보조) ○○ 거점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127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강진군(안전재난교통과)

내 용

1. 업무개요

강진군은 2020. 12. 24. ○○토건(주)(대표이사 ○○○)와 “○○천 지방하천 정비사업¹⁾”을 9,212,024천원에 계약하고 2023. 12. 23.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2021. 6. 28. (주)○○(대표이사 ○○○)과 “○○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을 1,837,000천원에 계약하여 시행중에 있다.

2. 가설방음벽 등 공사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하 ‘계약 집행기준’ 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1) 사업개요 : 하천정비 L= 5.6km, 교량 6개소, 가동보 1개소 등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강진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했다.

또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진군(안전재난교통과)은 2021. 12. 6. 감사일 현재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장 내 설치된 가설방음벽(W=2.0m, H=3.0m) 일부 구간(L=130m)에서 [그림] “가설방음벽 시공 부적정 현장사진”과 같이 설계 근입기초(L=1.5m) 보다 적게(L=0.8m) 시공되어 강한 바람에 전도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도 현재까지 재설치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림] 가설방음벽 시공 부적정 현장사진



또한 강진군(안전재난교통과)은 2021. 12. 6. 감사일 현재 현장과 설계도서를 살펴본 결과 [표] “임사침사지 등 미시공부분 등에 대한 미감액 현황”과 같이

토사를 함유한 원수로부터 침전법에 의하여 토사를 제거하는 임시침사지를 No.8 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No.6~No.30까지 호안공을 일부 시공하였으나 임시침사지를 설치하지 않았고, 임시침사지 법면보호를 위한 PP마대를 금액이 저렴하고 시공이 원활한 톤마대로 변경하지 않아 공사비 총 5,768천원을 감액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강진군(안전재난교통과)은 2021. 12. 6. 감사일 현재 현장과 설계도서 및 전자카드 근무시스템 구매/유지보수 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건설근로자가 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는 제도로 퇴직공제 근로일 수 신고누락 또는 허위신고 방지, 사업주 근로일 수 신고 간소화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설현장 근퇴단말기에 대하여 설계내역에는 근퇴단말기가 이동형 임대와 벽부형 임대 각 36개월로 설치 하도록 되어 있으나 ○○토건(주)(대표이사 ○○○)은 (주)○○○○(대표자 ○○○)과 2021. 6. 4. 계약하고 근퇴단말기 벽부형만 임대 32개월로 설치하고 이동형 임대 등은 설치하지 않아 공사비 10,527천원을 감액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임시침사지 등 미시공부분 등에 대한 미감액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당초		변경		증·감 (b-a)
		수량	공사비(a)	수량	공사비(b)	
계	3건		59,987		43,692	감 16,295
1	임시침사지	43m ²	2,662	-	-	감 2,662
2	임시침사지 (PP마대→톤마대)	683m ²	43,678	683m ²	40,572	감 3,106
2	건설현장 근퇴단말기	36개월	13,647	32개월	3,120	감 10,527

자료 : 강진군 제출자료 재구성

3. 건설공사 현장 품질시험기술자 승인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에 따르면 총공

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는 교육(기본교육 35시간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는 등 품질시험 자격을 갖춘 적격한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강진군은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품질시험계획 중 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진군(안전재난교통과)은 2021. 11. 25. 품질시험계획서 중 품질관리자 기술자 교육 이수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승인 통보하였으며, 2021. 11. 22. 건설사업자가 품질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기술인으로 변경 요청을 하였는데도 2021. 12. 6. 감사일 현재까지 승인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주요 자재의 품질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 공사 품질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미적용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에서는 공공이 시행하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2019. 4. 11.부터 지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작업발판(비계)을 설치할 때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재래식 작업발판(강관비계)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관 기본틀 조립 후 작업 발판·난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지대, 작업발판 및 난간이 조립 가능한 모듈 형태로 제작되어 일체형 거동
	

따라서 강진군은 “○○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추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일체형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을 적용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진군(안전재난교통과)은 “○○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작업발판(강관비계)을 일반 재래식 작업발판(강관비계)으로 25,522천원을 사업에 반영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책임건설사업관리원과 현장대리인은 설계서를 검토하여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설계변경을 강진군(안전재난교통과)에 설계변경 요구하지 않고 2021. 12. 6.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공공건설공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에서 마련한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시공사 설계변경 요구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을 이행하여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강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강진군수는

①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과다계상된 16,295,000원 감액 조치 및 가설방음벽(L=130m) 근입기초를 설계도서와 일치하게 재설치하고(시정)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품질시험 계획 검토·확인 후 승인 및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비계 설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 ○○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자연재난과)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는 2017. 5. 25. (주)○○엔지니어링(대표이사 ○○○) 등 2개사¹⁾와 “○○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을 계약²⁾(금액 1,184,200천원)하여 2018. 9. 14. 완료하였으며, 2019. 2. 21. (주)○○건설(대표이사 ○○○) 등 1개사³⁾와 “○○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을 계약⁴⁾(금액 18,786,282천원)하고 2022. 6. 30.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9. 2. 8. (주)○○엔지니어링(대표이사 ○○○) 등 1개사⁵⁾와 “○○천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계약⁶⁾(금액 1,715,006천원)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2. 공사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하 ‘계약 집행기준’ 이라 한다)」 제13

1) (주)○○엔지니어링 60%, (주)○○기술개발 30%, (주)○○엔지니어링 10%
2) 사업량 : 실시설계용역 1식 - 축제, 호안, 교량 등 세부설계
3) (주)○○종합건설(지분율 49%)
4) 사업량 : 축제 4.16km, 호안 4.35km, 교량4개소 등
5) ○○기술개발(주) ○○○ 49%
6) 사업량 : ○○천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

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라남도는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또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전라남도(자연재난과)는 2021. 12. 7. 기동감사일 현재 추가 설계변경 반영한 새마을교는 당초 합판거푸집으로 시공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그림] “새마을교 거푸집 및 비계 설치 사진”과 같이 유로폼으로 시공하는데 시공사인 (주)○○건설과 건설사업관리를 추진하는 (주)○○엔지니어링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설계를 변경하지 않아 29,000천원의 사업비를 감액 조치하지 않고 있다.

[그림] 새마을교 거푸집 및 비계 설치 사진



새마을교 거푸집 및 비계 설치 현황

그로 인하여 과다계상된 공사비 29,000천원이 설계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3.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 미등록 및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전라남도(자연재난과)는 2019. 2. 21.부터 2022. 6. 30.까지 “○○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문화재지표조사, 환경모니터링 및 지반조사 용역 등 총 4건의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였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⁷⁾”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라남도 또는 다른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위 시스템에 등재된 내용을 활용하여 용역수행실적, 업무중복도 등의 평가 등의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46조,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5조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지반조사가 수반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전산화⁸⁾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지역계획과)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등재 요청 공문을 접수하여 같은 내용을 2015년부터 총 4회⁹⁾에 걸쳐 시·군 등에 통보하였다.

따라서 전라남도(자연재난과)는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준공한 경우에 10일 이내 그 사실을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7)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야 건설기술용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14. 5. 23. 이후 용역실적은 이 시스템에 입력된 결과만 인정토록 하고 있음.

8)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www.geoinfo.or.kr) : 국토교통부는 전국토의 지반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 활용을 위하여 2003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지반정보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 중임

9) 지역계획과-5984(2015.4.20.), 지역계획과-5301(2017.3.13.), 지역계획과-6548(2017.3.29.), 지역계획과-4396(2018.3.7.)

(CEMS)에 등재하여야 하였고, 공사와 관련한 지반조사결과를 1개월 이내에 국토지반정보 통합 DB센터에 전산화 등록하여야 하였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전라남도(자연재난과)는 2021. 12. 7. 기동감사일 현재 “○○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관한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및 국토지반정보 통합 DB센터 등재 현황을 살펴본 결과 [표] “실시설계 및 지반조사 용역 시스템 미등록 현황”과 같이 실시설계 및 지반조사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등 시스템 등록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 실시설계 및 지반조사 용역 시스템 미등록 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업체	계약금액 (물량)	시스템 등록일	발주청	건설사업관리
○○천 새마을교 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021.04.29.~ 2021.06.28.	(주)○○	65,000천원 (교량 1식 등)	-	전라남도 (자연재난과)	○○엔지니어링(주) 외 1개사
○○천 새마을교 가설공사 지반조사용역	2021.04.29.~ 2021.06.28.	○○엔지 니어링(주)	5,600천원 (2공)	-	전라남도 (자연재난과)	○○엔지니어링(주) 외 1개사

자료 : 자연재난과 제출자료 재구성

이로 인하여 (주)○○이 완료한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 시스템에 미등재 되어 타 기관의 건설기술용역 참여시 실적이 불인정 되는 등 신규로 발주되는 다른 건설기술용역의 적격자 선정 시 왜곡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시추를 통해 조사된 지반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반정보 공유의 활성화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는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과다계상된 29,000,000원 감액 조치 및 미등록된 실시설계 및 지반조사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고흥군(건설과)

내 용

1. 업무개요

고흥군은 2019. 11. 12. ○○○○건설(주)(대표이사 ○○○)와 “○○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¹⁾”를 2,981,000천원에 계약하고 2022. 10. 29.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2019. 12. 27. (주)○○엔지니어링(대표이사 ○○○) 등 2개사와 “○○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885,900천원에 계약하여 시행중에 있다.

2. 공사 등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하 ‘계약 집행기준’ 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시공이 설계도면 및 지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1) 사업개요 : 도로 L=3.70km, B=8.0m, 암거 4개소 등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또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고흥군(건설과)은 2021. 12. 8. 감사일 현재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를 점검한 결과 설계서에 반영된 기준틀 219개소(수평 36, 비탈 183) 중 40개소(수평 5, 비탈 35)가 망실되었는데도 재설치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고흥군(건설과)은 [표] “강관비계 등 미시공부분 등에 대한 미감액 현황”과 같이 암거 높이가 2.0m로 강관비계를 설치하지 않고 시공하였는데도 감액하지 않고, 현장내 발생된 리핑암에 대한 사토운반 거리를 정산하지 않는 등 공사비 총 8,170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강관비계 등 미시공부분 등에 대한 미감액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당초		변경		증·감 (b-a)
		수량	공사비(a)	수량	공사비(b)	
계	2건		90,709		82,539	감 8,170
1	암거 강관비계	145m ²	3,449	-	-	감 3,449
2	사토운반(리핑암) L=5.0km → L=4.4km	6,549m ³	87,260	6,549m ³	82,539	감 4,721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기준틀 망실에 따른 도로 포장면 시공·확인에 대한 판단 불확실 및 공사비 8,170천원이 설계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고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과다계상된 8,170,000원 감액 조치 및 망실된 기준틀을 재설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주요요구 및 통보

제 목 ○○ ○○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완도군(안전건설과)

내 용

1. 업무개요

완도군은 2020. 6. 26. (주)○○건설(대표이사 ○○○)과 “○○ ○○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을 계약¹⁾(금액 1,286,044천원)하고 2022. 7. 1. 준공예정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2. 공사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하 ‘계약 집행기준’ 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시공이 설계도면 및 지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1) 위치 : 완도군 ○○읍 ○○리 일원(수혜면적 29ha), 사업량 : 제방보강 767m, 파라펫 823m(H=0.65)

따라서 완도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안전건설과)은 2021. 12. 9. 기동감사일 현재 “○○ ○○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 설계도서와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파라펫 기초부 버림콘크리트 시공량이 계상 착오로 인하여 물량 85m³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를 확인하여 설계변경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12,000천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가 필요하게 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우려가 발생되었다.

3. 건설공사 현장 품질시험계획 승인 업무처리 등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결과(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별표 5]에 따르면 초급 품질관리 대상 건설공사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규모 20m² 이상의 시험실과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는 최초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최초교육 35시간 이상과 품질관리 업무기간 3년 경과 전에 계속교육 35시간 이상 이수한 적격한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대하여 제출된 품질시험계획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규모 20m² 이상의 시험실과 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안전건설과)은 위 사업에 대하여 2020. 7. 2.부터 2021. 12. 9. 기동감사일 현재까지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였으나, 위 공사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건설의 품질관리자(○○○)는 품질관리 최초교육 이수 후 3년이 경과 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등을 준수하고 부실시공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가 품질관리 최초교육을 받지 않는 등 품질시험계획 업무를 태만히 하여 공사의 품질을 신뢰하지 못할 우려를 가져왔다.

관계기관 의견 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완도군수는

- 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현장 품질 시험계획 승인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고(주의)
- ② 설계도서에 누락된 일부 공정에 대하여 12,000,000원을 추가 확보하여 구조물이 설계도서와 일치되는 시공이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장성군(안전건설과)

내 용

1. 업무개요

장성군은 2020. 1. 10. ○○○○(유)(대표이사 ○○○)와 “○○ 소하천 정비사업¹⁾”을 1,920,628천원에 계약하고 2021. 12. 29. 준공예정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2. 공사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하 ‘계약 집행기준’ 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1) 사업개요 : 소하천 정비(L=1.54km, B=7.6~14.6m), 교량 6개소 등

따라서 장성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성군(안전건설과)은 2021. 12. 13. 감사일 현재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를 점검한 결과 설계서에 반영된 수평기준틀 30개소 중 6개소가 망실되었는데도 재설치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장성군(안전건설과)은 [표] “축제공 다짐 등 미시공부분 등에 대한 미감액 현황”과 같이 축제공, 배수통관 및 통문 다짐시 콤팩트를 사용하지 않고 시공하였는데도 감액하지 않고, 품질검사시험을 미실시한 품질시험비를 정산 감액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타설 시 합판거푸집을 유로폼으로 시공하는 등 공사비 30,635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축제공 다짐 등 미시공부분 등에 대한 미감액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당초		변경		증·감 (b-a)
		수량	공사비(a)	수량	공사비(b)	
계	4건		47,894		17,259	감 30,635
1	축제공 되메우기 다짐 (콤팩트 미시공)	4,274㎡	28,061	4,274㎡	6,105	감 21,956
2	배수통관 및 통문 되메우기 다짐 (콤팩트 미시공)	1,099㎡	7,183	1,099㎡	1,562	감 5,621
3	품질시험비	검사 10회 관리 27회	4,235	검사 2회 관리 27회	2,706	감 1,529
4	전석기초 (합판거푸집→유로폼)	175m	8,415	175m	6,886	감 1,529

자료 : 장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수평기준틀 망실에 따른 도로 포장면 시공·확인에 대한 판단 불확실과 과다계상된 공사비 30,635천원이 설계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3. 소하천 정비사업 사업계획 변경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소하천정비법」 제7조, 제8조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지침」(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하천 정비사업 설계단계에서 경제성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방법·절차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설계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전설계검토 승인 후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경미한 사업계획(사업비 10% 미만)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 시·도지사의 협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성군은 현지여건 반영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한 경미한 내용²⁾의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사전협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성군(안전건설과)은 “○○ 소하천 정비사업”에 전석쌓기 추가 등 경미한 내용의 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 도지사에게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추가되는 신규 공정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기회를 상실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장성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장성군수는

①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과다계상된 30,635,000원을 감액 조치 및 망실된 수평규준틀 6개소를 재설치하고(시정)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 변경승인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 변경개요 : 총공사비(당초 2,789백만원 → 변경 3,001백만원, 증 212백만원), 추가 신규공정(전석쌓기 628㎡, 교량 1개소 등)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도로교통과)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는 진도군의 도로여건 변화에 의한 교통환경 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5. 12. 18.부터 2021.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추진 현황”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추진 현황

(단위 : km,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자재 등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L=3.8km	17,142	10,800	6,342	2015.12.18.~ 2022.08.31.	○○건설(주) (○○○)	

자료 : 도로교통과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사업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표 2]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표 2]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사 (대표이사 / 지분율)	비고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1,955	2016.07.01.~ 2022.09.03.	(주)○○○○○○(○○○/70%) (주)○○엔지니어링(○○○/30%)	

자료 : 도로교통과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 등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다 공사감독관 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라남도(도로교통과)는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했다.

또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전라남도(도로교통과)는 2021. 12. 16. 기동감사일 현재 [표 3]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과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공사비 31,060천원을 감액 설계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변경하지 않고 있다.

[표 3]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설계변경 미 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당초		변경		증·감 (b-a)
		수량	공사비(a)	수량	공사비(b)	
계	2건		218,052		186,992	31,060
1	거제선착장 선박 왕래로 오탁방지막 일부구간(138m) 미설치	2,083m	185,911	1,945m	166,751	19,160
2	암반선 미노출구간(175m) 덩굴식재(멸꿀나무) 삭제 (No.2+280~350 70m, No.2+500~605 105m)	520주	32,141	345주	20,241	11,900

자료 : 도로교통과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과다계상된 공사비 31,060천원이 설계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는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과다계상된 31,060,000원을 감액 조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지방도 ○○○호선 수해복구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구례군(건설과)

내 용

1. 업무개요

구례군은 2020. 8월 집중호우에 의한 도로시설 피해를 복구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2021. 6. 10.부터 2021.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지방도 ○○○호선 수해복구공사 추진 현황”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지방도 ○○○호선 수해복구공사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지체			
지방도 ○○○호선 수해복구공사	낙석방지책 2,116m, 포장공 3,164㎡	2,168	1,336	832	2021.06.10. ~ 2022.03.31.	○○토건(주) (○○○)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 등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

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다 공사감독관 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고, 위 공사를 추진하는 ○○토건(주)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건설과)은 2021. 12. 16. 기동감사일 현재 [표 2] “지방도 ○○○호선 수해복구공사 설계 변경 미 실시 현황”과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총공사비 16,975천원을 감액 설계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변경하지 않고 있다.

[표 2] 지방도 ○○○호선 수해복구공사 설계 변경 미 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구분	당초		변경		증·감 (b-a)
		수량	공사비(a)	수량	공사비(b)	
계	4건		58,419		41,444	감 16,975
1	가설사무소(3X12X2.6m) 및 시험실 부분설치	7동	6,870	2동	1,578	감 5,292
2	가설창고(3X6X2.6m) 미설치	5동	2,985	-	-	감 2,985

연 번	구분	당초		변경		증·감 (b-a)
		수량	공사비(a)	수량	공사비(b)	
3	9공구 사면 안정성 검토비 부가가치세 이중계상	1식	30,235	1식	27,486	감 2,749
4	1공구 L형 옹벽 시공계획 변경→ 전석쌓기 40m	옹벽 40m	18,329	전석 40m	12,380	감 5,949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과다계상된 공사비 16,975천원이 설계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구례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례군수는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과다계상된 16,975,000원을 감액 조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영광군(상하수도사업소)

내 용

1. 업무개요

영광군은 악취방지 및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2018. 6. 4.부터 2021. 12. 17.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

(단위 : km,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자재 등			
○○○ 하수관로 정비사업	신설 L=14.5 개량 L=9.4 등	38,076	28,426	9,650	2018.06.04.~ 2022.12.01.	(주)○○건설 (○○○ 55%) ○○기업(주) (○○○ 45%)	

자료 : 영광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사업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표 2] “○○○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표 2] ○○○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사 (대표이사 / 지분율)	비고
○○○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229	2018.09.03.~ 2022.03.02.	(주)○○엔지니어링(○○○/66%) (주)○○기술개발(○○○/34%)	

자료 : 영광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다 공사감독관 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광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또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영광군(상하수도사업소)은 2021. 12. 17. 기동감사일 현재 [표 3] “○○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과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공사비 35,967천원을 감액 설계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변경하지 않고 있다.

[표 3] ○○○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계변경 미 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당초		변경		증·감 (b-a)
		수량	공사비(a)	수량	공사비(b)	
계	2건		160,515		124,548	감 35,967
1	반복되는 공정에 대한 시공상세도 작성분 정산(감 137장)	937장	132,293	800장	112,950	감 19,343
2	순환골재 반입시 운반거리 정산 (L= 20km→L= 1.0km)	1,842m³	28,222	1,842m³	11,598	감 16,624

자료 : 영광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과다계상된 공사비 35,967천원이 설계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3. 공사관리관 현장 합동 점검 미참석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11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기술지원기술인은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이 제출한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12조 제11항에 따르면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등을 위해 공사관계자 회의를 참석하여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 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광군 공사관리관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 건설공사에 대해 분기별로 기술지원기술인과 함께 합동 점검을 수행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영광군(상하수도사업소) 공사관리관³⁾은 2018. 6. 4.부터 2021. 12. 17. 기동감사일 현재까지 현장에서 실시한 현장 합동 점검 12회⁴⁾ 중 7회를 사무실 내 고유 행정업무(인·허가 및 소송 등) 및 타 현장의 긴급 현안업무 처리 등의 사유로 합동 점검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공사관리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문제점 파악 등 발주청의 건설공사 총괄업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영광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영광군수는

- ①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과다계상된 35,967,000원을 감액 조치하고(시정)
-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공사관리관은 현장대리인, 기술지원기술인과 합동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 ○○○(2018.06.04.~2020.07.02.), ○○○(2020.07.03.~현재)

4) 1차(2018.12.18.) 2차(2019.3.19.) 3차(2019.6.24.) 4차(2019.9.2.) 5차(2019.12.19.) 6차(2020.3.5.), 7차(2020.6.9.) 8차(2020.7.14.) 9차(2020.12.19.) 10차(2021.4.13.) 11차(2021.6.15.) 12차(2021.9.19.)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보성군(안전건설과)

내 용

1. 업무개요

보성군은 ○○○를 항구적으로 정비하여 침수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8. 6. 20.부터 2021. 12. 20.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

(단위 : km,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급액	관급 등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천 L= 4.1 펌프장 3개소 교량 1개소 등	25,076	15,085	9,991	2018.06.20.~ 2022.11.30.	○○건설(주) (○○○ 55%) ㈜○○○○ (○○○ 45%)	

자료 : 보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사업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표 2]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표 2]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사 (대표이사 / 지분율)	비고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1,989	2018.12.18.~ 2022.05.07.	㈜○○종합기술(○○○/60%) ㈜○○엔지니어링(○○○/40%)	

자료 : 보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다 공사감독관 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성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또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보성군(안전건설과)은 2021. 12. 20. 감사일 현재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준틀 25개소(수평 5, 수직 20)가 망실 되었는데도 재설치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보성군(안전건설과)은 [표 3] “시공상세도 등 설계변경 미 실시 현황”과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공사비 41,910천

원을 감액 설계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변경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다.

[표 3] 시공상세도 등 설계변경 미 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당초		변경		증·감 (b-a)
		수량	공사비(a)	수량	공사비(b)	
계	2건		55,770		13,860	감 41,910
1	미작성된 시공상세도 정산 (감 240장)	350장	44,000	110장	13,860	감 30,140
2	교명주 설치	4개소	11,770	-	-	감 11,770

자료 : 보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과다계상된 공사비 41,910천원이 설계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

3.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기술자 승인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는 교육(기본교육 35시간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는 등 품질시험 자격을 갖춘 적격한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성군은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의 제출된 품질시험계획 중 교육을 이수한 초급기술인 1인 이상 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보성군(안전건설과)은 2021. 8. 31. 제출한 변경 품질시험계획서 중 품질관리 기술자 교육 이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승인 통보하여 교육을 미이수한 기술자가 품질관리 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주요 자재의 품질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 공사 품질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보성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보성군수는

- ①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과다계상된 41,910,000원 감액 조치 및 망실된 기준틀 25개소(수평 5, 수직 20)를 재설치하고 (시정)
-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현장 품질 시험계획 승인 업무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광양시(철강항만과)

내 용

1. 업무개요

광양시는 어항 기능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과 휴게·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2019. 3. 7. ○○○○⁵⁾(대표이사 ○○○)과 “○○○ 어촌뉴딜300사업⁶⁾”을 10,000,000천원에 위탁 계약하고, 2021. 12. 21.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현황”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현황

(단위 : km,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지재 등			
○○○ 어촌뉴딜300사업 (잔교및기타공사)	잔교(4,510㎡) 준설(15,705㎡) 등	5,857	3,092	2,765	2020.06.18.~ 2021.11.17.	○○종합건설(주) (○○○)	
○○○ 어촌뉴딜300사업 (조경및기타공사)	주차장(1,118㎡) 광장(2,412㎡) 등	1,102	796	306	2020.12.22.~ 2021.12.31.	㈜○○종합건설 (○○○)	
○○○ 어촌뉴딜300사업 (건축-기계)	주민공동 작업장 2동	511	497	14	2021.04.26.~ 2021.12.31.	○○종합건설(주) (○○○)	
○○○ 어촌뉴딜300사업 (산업전기)	조명시설, 경관조명 등	397	320	77	2021.03.29.~ 2021.12.31.	㈜○○이엔지 (○○○)	

자료 : ○○○○ 제출자료 재구성

5)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발주청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6) 사업개요 : 공통사업(물양장, 도로, 주차장 등), 특화사업(광장 등)

또한 위 사업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표 2] “2019년 어촌뉴딜300사업(○○항 등 5구역) 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중에 있다.

[표 2] 2019년 어촌뉴딜300사업(○○항 등 5구역) 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사 (대표이사 / 지분율)	비고
2019년 어촌뉴딜300사업(○○항 등 5구역) 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1,802	2020.08.03.~ 2022.01.24.	(주)○○이엔씨(○○○/50%) ○○기술개발(주)(○○○/30%) (주)○○엔지니어링(○○○/20%)	

자료 : ○○○○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다 공사감독관 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6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접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은 설계도면 및 공사 지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했다.

또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지사장)은 2021. 12. 21. 감사일 현재 [표 3] “꽃잔디 이식 및 굴취 등 미시공분에 대한 미회수·미감액 현황”과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공사비 18,352천원을 회수 및 감액해야 하는데 설계변경 등을 하지 않고 있다.

[표 3] 꽃잔디 이식 및 굴취 등 미시공분에 대한 미회수·미감액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당초		변경		증·감 (b-a)	비고
		수량	공사비(a)	수량	공사비(b)		
합계	4건	-	39,446	-	21,094	감액 13,526 회수 4,826	
소계	조경 및 기타공사	-	34,200	-	20,674	13,526	감액
1	꽃잔디 이식 및 굴취 불필요	1,084㎡	3,961	-	-	3,961	
2	보차도경계석 등 기초콘크리트 거푸집 일부 미시공	306m	9,276	306m	6,247	3,029	
3	설계검토업무수수료 불필요	1식	639	-	-	639	
	제경비	1식	20,324	1식	14,427	5,897	
소계	잔교 및 기타공사	-	5,246	-	420	4,826	회수
1	연결부 및 부대공 스페이스 미설치	4,496㎡	3,354	153㎡	269	3,085	
	제경비	1식	1,892	-	151	1,741	

자료 : ○○○○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과다계상된 공사비 18,352천원이 회수 및 설계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3.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기술자 승인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및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결과(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은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대하여 제출된 품질시험계획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지사장)은 2020. 12. 22.부터 2021. 12. 21. 기동감사일 현재까지 3개사업(조경, 건축, 전기)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공사 품질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시공상세도 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국토교통부 고시) 제91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 구조부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 기술인이 검토·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한 후 7일 이내에 승인 통보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2021. 10. 21.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시공상세도 68장에 대하여 승인 통보하지 않고 “○○○ 어촌뉴딜 300사업(잔교 및 기타공사)”을 2021. 11. 17. 최종 준공 처리하였다.

그로 인하여 구조적 안전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광양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광양시장은

①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과다계상된 18,352,000원을 회수 및 감액 조치하고(시정)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현장 품질 시험계획 승인 및 시공상세도 승인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훈계·시정·주의요구

제 목 ○○사업 기반시설정비 토목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순천시(미래산업과)

훈계대상자 순천시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순천시는 노후화 및 기반시설 열악 등으로 산업단지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기반시설 정비 확충을 통한 산업기능 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2020. 6. 25. 부터 2021. 12. 22.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사업 기반시설정비 토목공사 추진 현황”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사업 기반시설정비 토목공사 추진 현황

(단위 : km,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자재 등			
○○사업 기반시설정비 토목공사	기반시설정비 A=576,696㎡	6,755	4,177	2,578	2020.06.25. ~ 2022.01.15.	○○종합건설(주) (○○○)	

자료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사업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표 2]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중에 있다.

[표 2]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사 (대표이사 / 지분율)	비고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586	2020.01.06.~ 2021.12.31.	(주)○○○○○건축사사무소(○○○/51%) (주)○○종합기술(○○○/49%)	

자료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주사 ○○○은 2020. 1. 1.부터 2021. 12. 22. 현재까지 ○○○○팀장으로 ○○사업 기반시설정비 토목공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 공사 등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다 공사감독관 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는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또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순천시(미래산업과)는 2021. 12. 22. 감사일 현재 [표 3] “시공상세도 미작성 등 미시공분에 대한 미감액 현황”과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한데도 공사비 62,900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다.

[표 3] 시공상세도 미작성 등 미시공분에 대한 미감액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당초		변경		증·감 (b-a)
		수량	공사비(a)	수량	공사비(b)	
계	9건	-	237,822	-	174,922	감 62,900
1	시공상세도 미작성	17매	2,612	-	-	감 2,612
2	품질시험 일부 미실시	270회	14,391	107회	8,438	감 5,953
3	도로경계블럭 기초콘크리트 거푸집 일부 미시공	1,456m	25,384	1,456m	18,165	감 7,219
4	침사지 PP마대 쌓기 및 헐기 미시공	423개	1,757	-	-	감 1,757
5	은행나무 등 조경식재공 복합비료 미사용	17,952주	88,254	17,952주	71,418	감 16,836
6	보도포장공 보조기층 다짐 시 살수 미실시	1,677m ²	6,919	1,677m ²	6,015	감 904
7	우수공 되메우기 및 다짐 (램머→콤팩트) 시공	2,029m ²	16,804	2,029m ²	9,743	감 7,061
8	기존연결관 마감캡 미시공	65개	650	-	-	감 650
9	배수설비 오접수행 연막시험 미실시	11가구	333	-	-	감 333
	제경비	-	80,718	-	61,143	감 19,575

자료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과다계상된 공사비 62,900천원이 설계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¹⁾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르면 준공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감독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 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와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구매집행 사진 등)로 제출된 해당 서류의 진위 여부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 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안전시설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순천시(미래산업과)는 [표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현황”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안전사다리, PE드럼, 쏘라부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 환경 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1~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 합계액의 2.93%~1.86%까지 적용함

등'에 대한 정산을 소홀히 하여 2,178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다.

[표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지적내용	사용불가 대상 금액	비 고
계	4건	2,178	
1	2020년 9월 목적외사용(안전사다리)	106	
2	2020년 12월 목적외사용(쓸라부표등)	246	
3	2021년 4월 목적외사용(PE드럼)	1,650	
4	2021년 9월 목적외사용(쓸라부표등)	176	

자료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분 2,178천원이 설계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4. 건설공사 현장 품질시험계획 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결과(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순천시는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 및 변경 품질시험계획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순천시(미래산업과)는 건설사업자로부터 2020. 8. 21.과 2021. 10. 1.

품질기술자 교체를 위한 변경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았는데도 2021. 12. 21. 기동감사일 현재까지 변경된 품질시험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공사 품질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5. 현장시공 합동 점검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11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기술지원기술자는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기술지원기술자가 제출한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12조 제11항에 따르면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등을 위해 공사관계자 회의를 참석하여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 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공사관리관, 현장대리인, 기술지원기술자 전원이 참석하는 합동 점검을 분기별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2021. 6. 15.부터 2021. 12. 22. 기동감사일 현재까지 공사관리관, 현장대리인, 기술지원기술자 전원이 참석하는 합동 점검(2회)을 미수행 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합동 점검을 통한 건설공사의 문제점 파악 및 현장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의 미수행으로 현장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6. 차선도색공사 재귀 반사 성능시험 준수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과 「KS M 6080」(2010. 7. 9. 구 행정안전부령 제147호) 그리고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재귀 반사²⁾ 성능이 요구되는 도로상의 노면 표시용 도료를 설치 시 시공 직후 1주일 후에 재귀 반사 성능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10km 이내의 경우 1km당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 20개소를, 10km 이상의 경우에는 초과하는 1km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표 5] “도료형 노면표시 재귀 반사 성능 기준 현황”과 같이 90%이상의 재귀 반사 성능을 발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5] 도료형 노면표시 재귀 반사 성능 기준 현황

(단위 : mcd/m²·LUX)

구 분	최소 재귀 반사 성능			비고
	황색	백색	청색	
설 치 시	240	150	80	기준
우천(습윤시)	100	70	40	권장

따라서 순천시에서는 2021. 12. 10. 차선도색 시공 직후 1주일 후에 재귀 반사 성능을 검사하여 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준공처리를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순천시(미래산업과)는 2021. 12. 22. 감사일 현재까지 차선도색공사에 대한 재귀 반사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채 2021. 12. 20.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준공계를 접수하였고 2021. 12. 21. 준공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차선도색공사에 따른 재귀 반사 성능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야간이나 우천 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증가 될 우려가 있다.

2) 광원에서 입사된 빛을 받으면 광원 방향으로 다시 되돌려 반사하는 것

관계기관 의견 순천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 ① ○○사업 기반시설정비 토목공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 팀장 지방 ○○주사 ○○○을 훈계하고(훈계)
- ②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과다 계상된 65,078,000원 감액 조치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등 규정에 따라 재귀반사 성능시험 실시 후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며(시정)
-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현장 품질시험계획 승인업무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하는 현장 합동점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항 물양장 개축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해운항만과)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는 “제3차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나로도항을 이용하는 어민의 편의성 향상과 관광객의 이용성 증진을 위해 물양장의 확장을 계획하고, 2019. 12. 10.부터 2021. 12. 23.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항 물양장 개축공사 추진 현황”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항 물양장 개축공사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급액	관급자재			
○○○항 물양장 개축공사	물양장 337m, 준설 931㎡	9,532	8,585	947	2019.12.10.~ 2022.04.03.	(주)○○ (○○)	

자료 : 해운항만과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위 사업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표 2] “○○○항 물양장 개축 등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현황”과 같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중에 있다.

[표 2] ○○○항 물양장 개축 등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사 (대표이사 / 지분율)	비고
○○○항 물양장 개축 등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742	2019.12.24.~ 2022.04.13.	(주)○○엔지니어링(○○○/40%) (주)○○엔지니어링(○○○/30%) (주)○○○○○건축사사무소(○○○/30%)	

자료 : 해운항만과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 등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다 공사감독관 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라남도도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또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전라남도(해운항만과)는 2021. 12. 23. 기동감사일 현재 [표 3] “○○○항 물양장 개축공사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과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총공사비 48,993천원을 감액 설계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변경하지 않고 있다.

[표 3] ○○○항 물양장 개축공사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당초		변경		증·감 (b-a)
		수량	공사비(a)	수량	공사비(b)	
계	3건		115,075		66,082	감 48,993
1	오탁방지막 철거에 따른 관리비 미정산	28개월	55,935	12개월	23,972	감 31,963
2	준설공사를 위한 부잔교 이설후 미설치	1회	2,990	-	-	감 2,990
3	지표침하판 등 계측장비 손료 및 분석비 미정산	12개월	56,150	9개월	42,110	감 14,040

자료 : 해운항만과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과다계상된 공사비 48,993천원이 설계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는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과다계상된 48,993,000원을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주의요구

제 목 ○○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목포시(교육체육과)

내 용

1. 업무개요

목포시는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적합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종합경기장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체육행사 및 문화공간으로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9. 12. 19.부터 2021. 12. 6.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 건립공사 추진 현황”과 같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 건립공사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자재 등			
○○ 건립공사	경기장 1식	76,523	69,808	6,715	2019.12.19. ~2023.07.25.	○○건설(주) 외 3 (○○○ 외 3)	

자료 : 목포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사업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표 2] “○○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현황”과 같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표 2] ○○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현황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사 (대표이사)	비고
○○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3,433	2019.08.22. ~2023.03.31.	(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외 4 (○○○ 외 4)	

자료 : 목포시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11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기술지원기술인은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이 제출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102조 제6항 따르면 발주청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 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 실시 여부를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에 작성하고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12조 제11항에 따르면 공사관리관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등을 위해 공사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 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하고, 기성 및 준공검사를 입회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목포시 공사관리관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기술지원기술인 등과 함께 합동 점검을 수행하고, 기성·준공검사에 입회하여 기성·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준공검사 실시 여부를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에 작성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목포시(교육체육과) 공사관리관¹⁾은 2019. 12. 19.부터 2021. 12. 6. 기동감사일 현재까지 현장에서 실시한 합동 점검 6회²⁾ 중 1회를 참석하지 않았고,

1) ○○○(2019.12.08.~현재)

2) 1차(2020.03.18.), 2차(2020.06.23.), 3차(2020.09.16.), 4차(2021.03.24.), 5차(2021.06.22.), 6차(2021.09.14.),

기성·준공검사(정식) 6회³⁾ 중 1회를 참석하지 않아 공사관리관의 업무뿐 아니라 건설공사의 문제점 파악 등 발주청의 건설공사 총괄 업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목포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목포시장은 앞으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 등에 따라 공사관리관이 현장에 실시한 합동 점검을 수행하고 기성·준공검사에 입회하는 등 공사관리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 1차분 기성 3차(2020.02.12.), 기성 4차(2020.03.18.), 기성 6차(2020.05.20.), 기성 8차(2020.07.23.), 준공(2020.11.17.), 2차분 기성 3차(2020.10.14.)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면 ○○○○○○센터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곡성군(안전건설과)

훈계대상자 곡성군 ○○○○과 지방○○서기 ○○○

내 용

1. 업무개요

곡성군은 농촌 지역의 고령화, 인구 과소화 등에 따른 정주 환경 및 생활서비스 취약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1. 1. 4.부터 2021. 12. 7.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면 ○○○○○○센터 건축공사 추진 현황”과 같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면 ○○○○○○센터 건축공사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급액	관급자재			
○○면 ○○○○○○센터 건축공사	연면적 2,238㎡	4,260	3,000	1,260	2021.01.04. ~ 2022.01.28.	○○종합건설주 (○○○)	

자료 : 곡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사업의 건축공사 관리를 위하여 [표 2] “○○면 ○○○○○○센터 건축 감리용역 현황”과 같이 건축 감리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표 2] ○○면 ○○○○○○센터 건축 감리용역 현황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사 (대표이사)	비고
○○면 ○○○○○○센터 건축 감리용역	20	2021.03.31. ~ 2022.03.30.	○○건축사사무소(○○○)	

자료 : 곡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서기 ○○○은 2021. 0. 00.부터 2021. 00. 0.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면 ○○○○○○센터 건축공사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다 공사감독관 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곡성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곡성군(안전건설과)은 2021. 12. 7. 기동감사일 현재 설계서에 반영된 4개소의 가설사무실 중 3개소만 설치하고, 시공상세도 10매는 제작하지 않는 등

총공사비 7,898천원을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3.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1.1.에 콘크리트의 타설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전되어 소요강도 및 내구성을 가지며, 유해한 타설 결함부가 없는 구조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2.6.에 콘크리트 다짐은 부어넣기 중에 적절한 방법으로 철근이나 매설물 주위 및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철저하게 다지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짐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곡성군은 콘크리트 타설 시공 시 진동다짐기를 활용하여 다짐을 철저하게 하는 등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곡성군(안전건설과)은 2021. 12. 7. 기동감사일 현재 [그림] “○○면 ○○○○○○센터 건축공사 현장 사진”과 같이 벽체 및 기둥 등에서 재료분리 현상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구조체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데도 구조 안전검토 및 보완시공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그림] ○○면 ○○○○○○센터 건축공사 현장 사진



4. 건설공사 현장 품질시험계획 승인 업무처리 등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에 따르면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결과(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게 되어 있고,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하루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기술인이 발주의 승낙을 받지 않고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곡성군은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제출된 품질시험계획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규모 20㎡ 이상의 시험실과 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초급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했다.

또한 곡성군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수행 건설기술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하루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자의 승낙을 받고 이탈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곡성군(안전건설과)는 2021. 1. 4.부터 2021. 12. 7. 기동감사일 현재까지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지 않고 시험·검사장비를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품질시험·검사 업무수행 건설기술인으로 선임된 ○○○는 2021. 1. 4.부터 2021. 12. 7. 기동감사일 현재까지 12개월 동안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품질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지 않고, 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수행 건설기술인 관리자를 상주시키지 않는 등 품질시험계획 업무를 태만히 하여 공사의 품질을 신뢰하지 못할 우려를 가져 왔다.

5.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계획 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¹⁾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르면 건설사

1)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유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향타 및 향받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에게 제출해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고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발주청이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의 검토결과(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를 판정한 후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의 경우에는 승인서를 건설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곡성군은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곡성군(안전건설과)은 2021. 1. 4.부터 2021. 12. 7. 기동감사일 현재까지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지 않아 공사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가져 왔다.

관계기관 의견 곡성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곡성군수는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등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을

검토·승인하지 않고, 시험 및 검사장비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배치된 상주 건설 기술인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지방○○서기 ○○○을 훈계하고(훈계)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등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수행 건설기술인으로 선임되어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데도 상주하지 않은 ○○○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등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검토·승인하고, 시험 및 검사장비를 배치하고,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설계에 반영된 가설사무소 미설치 등에 대한 공사비 7,898,000원을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도로 확장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담양군(도시디자인과)

내 용

1. 업무개요

담양군은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역 특성을 활용한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9. 12. 30.부터 2021. 12. 8.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도로 확장사업 추진 현황”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도로 확장공사 추진 현황

(단위 : km,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급액	관급자재			
○○도로 확장사업	1.80	7,878	5,394	2,484	2019.12.30. ~ 2022.06.30.	○○건설(주) (○○○)	

자료 : 담양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사업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표 2] “○○도로 확장공사 등 2개 지구 통합사업관리용역 현황”과 같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중에 있다.

[표 2] ○○도로 확장공사 등 2개 지구 통합사업관리용역 현황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사 (대표이사 / 지분율)	비고
○○도로 확장사업 등 2개 지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841	2019.12.25. ~ 2022.01.19.	(주)○○(○○○ / 60%) ○○건설(주)(○○○ / 40%)	

자료 : 담양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다 공사감독관 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담양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담양군(도시디자인과)은 2021. 12. 8. 기동감사일 현재 [표 3] “○○도로 확장공사 설계 변경 미실시 현황”과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총공사비 49,256천원을 감액 설계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변경하지 않고 있다.

[표 3] ○○도로 확장공사 설계 변경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당초		변경		증·감 (b-a)
		수량	공사비(a)	수량	공사비(b)	
계	7건		178,154		128,898	감 49,256
1	L형 측구 및 보차도 경계석 기초콘크리트 타설 시 한측면 유로폼 미설치	1,178m	15,019	685m	13,000	감 2,019
2	기존 철근콘크리트 깨기 시 발생한 고제처리 미반영	-	-	1.605톤	- 480	감 480
3	세륜세차시설(자동세륜기) 일부 미설치	2개소	19,044	1개소	9,522	감 9,522
4	비탈기준틀 및 수평기준틀 일부 미설치	192개소	13,054	127개소	6,078	감 6,976
5	사토 운반거리 미정산	9,995m ³ (L=5km)	81,999	9,995m ³ (L=3.1km)	67,829	감 14,170
6	왕벚나무 이식 품 중 유기질비료 미사용	3,270kg	1,062	-	-	감 1,062
7	시공상세도 미작성	1식	2,773	-	-	감 2,773
8	제경비		45,203		32,949	감 12,254

자료 : 담양군 제출자료 재구성

3. 공사관리관 현장 합동 점검 미참석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11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기술지원기술인은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이 제출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12조 제11항에 따르면 공사관리관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등을 위해 공사관계자 회의를 참석하여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 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담양군 공사관리관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기술지원기술인과 함께 합동 점검을 수행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담양군(도시디자인과) 공사관리관¹⁾은 2020. 6. 15.부터 2021. 12. 8. 기동감사일 현재까지 현장에서 실시한 합동 점검 6회²⁾ 중 6회 모두를 사무실 내 고유 행정업무(인·허가 및 소송 등) 및 타 현장의 긴급 현안업무 처리 등의 사유로 합동 점검에 참석하지 않아 공사관리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문제점 파악 등 발주청의 건설공사 총괄 업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담양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담양군수는

- ①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한 공사비 49,256,000원을 감액 조치하고 (시정)
- ② 앞으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 등에 따라 공사관리관은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하는 합동 점검을 수행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 ○○○(2019.12.30.~2020.06.30.) ○○○(2020.07.01.~2021.06.30.) ○○○(2021.07.01.~2021.09.30.)
○○○(2021.10.01.~현재)

2) 1차(2020.06.15.), 2차(2020.09.09.), 3차(2020.12.23.), 4차(2021.03.15.), 5차(2021.06.09.), 6차(2021.09.08.)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장흥군(수도사업소)

내 용

1. 업무개요

장흥군은 생활하수 및 오수 미처리로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생활하수 및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2019. 7. 22.부터 2021. 12. 10. 감사일 현재 까지 [표 1] “○○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

(단위 : km,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자재			
○○ 덕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4.776	3,759	2,765	994	2019.07.22 ~ 2022.06.30	○○건설(주) (○○○)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사업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표 2] “○○ 외 2개 지구 하수도정비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과 같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중에 있다.

[표 2] ○○ 외 2개지구 하수도정비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사 (대표이사 / 지분율)	비고
○○ 외 2개지구 하수도정비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1,380	2018.06.26 ~2022.03.30	(주)○○종합기술(○○○/65%) (주)○○○○○건축사사무소(○○○/35%)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다 공사감독관 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수도사업소)은 2021. 12. 10. 기동감사일 현재 [표 3] “○○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과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총공사비 20,915천원을 감액 설계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변경하지 않고 있다.

[표 3] ○○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당초		변경		증·감 (b-a)
		수량	공사비(a)	수량	공사비(b)	
계	5건		25,868		4,953	감 20,915
1	처리장 시스템동바리 미설치	214.7공/m ²	3,685	-	-	감 3,685

연번	구분	당초		변경		증·감 (b-a)
		수량	공사비(a)	수량	공사비(b)	
2	처리장 강관비계다리 미설치	11.2㎡	930	-	-	감 930
3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 지수판 일부 미설치	125.9m	5,190	26.8m	1,105	감 4,085
4	처리장 외벽 모르타르 바름 미시행	96.3㎡	2,387	-	-	감 2,387
5	오수관로 석분 다짐장비 변경 (램머 → 핸드가이드식)	9,995㎡	3,324	9,995㎡	1,883	감 1,441
6	제경비		10,352	-	1,965	감 8,387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3. 공사관리관 현장 합동 점검 및 기성·준공검사 미참석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11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기술지원기술인은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이 제출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102조 제6항 따르면 발주청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 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 실시 여부를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에 작성하고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12조 제11항에 따르면 공사관리관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등을 위해 공사관계자 회의를 참석하여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 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하고, 기성 및 준공검사를 입회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 공사관리관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기술지원기술인 등과 함께 합동 점검을 수행하고, 기성·준공검사에 입회하여 기성·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준공검사 실시 여부를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에 작성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수도사업소) 공사관리관¹⁾은 2019. 7. 22.부터 2021. 12. 10. 기동감사일 현재까지 현장 합동 점검을 분기별 각 1회씩 총 7회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1회도 실시하지 않고 월 1회 실시하는 정기 점검으로 대체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성·준공검사 7회²⁾ 중 7회 모두 사무실 내 고유 행정업무(인·허가 및 소송 등) 및 타 현장의 긴급 현안업무 처리 등의 사유로 기성·준공검사에 참석하지 않아 공사관리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문제점 파악 등 발주청의 건설공사 총괄 업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장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 ①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한 공사비 20,915,000원을 감액 조치하고 (시정)
- ② 앞으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 등에 따라 공사관리관 등이 현장에 실시한 현장 합동 점검 수행 및 기성·준공검사 입회 등 공사관리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 ○○○(2019.07.22.~2019.12.31.) ○○○(2020.01.01.~2020.08.09.) ○○○(2020.08.10.~2020.12.31.)
○○○(2021.01.01.~현재)

2) 1차분 기성 1차(2019.12.27.), 기성 2차(2020.03.26.) 기성 3차(2020.09.07.) 준공(2020.12.21.)
2차분 기성 1차(2020.03.26.), 준공(2020.12.21.), 3차분 준공(2021.04.28.)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상하수도사업소)

내 용

1. 업무개요

화순군은 급수구역 용수 수요량 부족 및 강화된 먹는 물 수질기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8. 9. 12.부터 2021. 12. 14.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

(단위 : m³/일,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급액	관급자재			
○○처리시설 설치사업	5,000	16,528	11,295	5,233	2018.09.12. ~2022.04.11	○○건설(주) (○○)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사업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표 2] “○○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현황”과 같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표 2] ○○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현황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사 (대표이사 / 지분율)	비고
○○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369	2018.10.04. ~2022.02.07.	(주)○○기술공단(○○○/60%) ○○건설(주)(○○○/40%)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다 공사감독관 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또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화순군(상하수도사업소)은 2021. 12. 14. 기동감사일 현재 조경공사에 반영된 풍화암 절토사면 내 동백나무 30주, 홍가시나무 30주, 회양목 200주 등의 식재가 불가하여 공사비 13,541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주)○○기술공단 소속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은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 계상된 13,541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다.

3. 공사관리관 기성·준공검사 미참석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102조 제6항 따르면 발주청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 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 공사관리관은 기성·준공검사에 입회하여 기성·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준공검사 실시 여부를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에 작성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화순군(상하수도사업소) 공사관리관¹⁾은 2018. 9. 12.부터 2021. 12. 14. 기동감사일 현재까지 현장에서 실시한 기성·준공검사 11회²⁾ 중 4회³⁾를 사무실 내 고유 행정업무(인·허가 및 소송 등) 및 타 현장의 긴급 현안업무 처리 등의 사유로 기성·준공검사에 참석하지 않아 공사관리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건설

1) ○○○(2018.09.12.~2019.07.30.), ○○○(2019.07.31.~2020.06.30.), ○○○(2020.07.01.~현재)

2) 1차분 준공(2019.04.02.),

2차분 1회 기성(2019.06.17.), 2회 기성(2019.08.27.), 3회 기성(2019.11.06.), 준공(2019.12.19.),

3차분 1회 기성(2020.04.24.), 2회 기성(2020.06.17.), 3회 기성(2020.09.22.), 준공(2020.12.21.),

4차분 1회 기성(2021.06.22.), 2회 기성(2021.11.29.)

3) 2차분 1회 기성(2019.06.17.), 2회 기성(2019.08.27.), 3회 기성(2019.11.06.), 3차분 1회 기성(2020.04.24.)

공사의 문제점 파악 등 발주청의 건설공사 총괄 업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4. PE다중벽관 보관 부적정 및 조정조 시설 안전표지 미설치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위 공사의 「공사시방서」 1-5(현장업무관리) 1.2(자재관리) 1.2.5(보관 및 보호)에 따르면 손상될 수 있는 제품은 불투수성의 덮개를 덮어야 하며 제품이 더러워지거나, 변형·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공사시방서 1-6(건설안전 및 환경관리) 1.1(건설안전관리) 1.1.5(안전관리활동)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금지, 경고, 지시를 위한 안전표지와 비상시 조치의 안내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표지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사의 시공자는 PE다중벽관을 불투수성의 덮개를 덮어 제품이 더러워지거나 변형·손상되지 않게 보관하고, 높이 4.5m, 면적 175.7㎡의 조정조시설은 금지, 경고, 지시 등의 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공사의 시공자는 PE다중벽관을 불투수성의 덮개를 덮어 제품이 더러워지거나 변형·손상되지 않게 보관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그림] “PE다중벽관 현장보관 및 조정조시설 설치 현황”과 같이 PE다중벽관을 불투수성 덮개가 아닌 투수성 덮개를 덮은 채로 보관하고 있다.

[그림] PE다중벽관 현장보관 및 조정조시설 설치 현황



PE다중벽관 보관 전경



조정조시설 설치 전경

또한 위 공사의 시공자는 높이가 4.5m, 면적 175.7㎡의 되는 조정조시설을 설치하고도 금지, 경고, 지시 등의 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는데도 조정조시설을 설치하고 금지 등의 안전표지를 부착하지 않은채로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PE다중벽관은 바람이 불고 비가와서 관 내·외부에 이물질이 부착되어 변형 및 손상의 우려가 있고, 설치된 조정조시설은 안전표지가 부착되지 않아 안전사고 등 발생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①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한 공사비 13,541,000원을 감액 조치하고 (시정)

② 앞으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 등에 따라 공사관리관은 현장에서 실시한 기성·준공검사에 입회하며

「공사시방서」 1.2.5. 등에 따라 PE다중벽관을 불투수성 덮개로 덮고, 높이 4.5m의 조정조 시설은 추락사고 방지 등을 위한 안전표지를 부착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상하수도사업소)

내 용

1. 업무개요

해남군은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하여 지방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019. 12. 24.부터 2021.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

(단위 : km,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자재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62.66	15,715	9,645	6,070	2019.12.24. ~2022.12.07.	○○건설(주)(○○○) 주○○건설(○○○)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사업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표 2]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현황”과 같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중에 있다.

[표 2]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사 (대표이사 / 지분율)	비고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1,843	2020.06.04. ~ 2023.05.19.	주○○(○○○/70%) 주○○ENG(○○○/30%)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다 공사감독관 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해남군(상하수도사업소)은 2021. 12. 16. 기동감사일 현재 설계도서에 반영된 가시설 계측 미실시로 계측관리비 감액이 필요한데도 공사비 41,707천원을 감액 설계 변경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주)○○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는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 계상된 41,707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다.

3. 공사관리관 현장 합동점검 및 기성·준공검사 미참석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11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기술지원기술인은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이 제출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102조 제6항 따르면 발주청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 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 실시 여부를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에 작성하고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12조 제11항에 따르면 공사관리관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등을 위해 공사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 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하고, 기성 및 준공검사를 입회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 공사관리관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기술지원기술인과 함께 합동 점검을 수행하고, 기성·준공검사

에 입회하여 기성·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준공검사 실시 여부를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에 작성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해남군(상하수도사업소) 공사관리관¹⁾은 2019. 12. 24.부터 2021. 12. 16. 기동감사일 현재까지 현장에서 실시한 합동 점검 7회²⁾ 중 7회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기성·준공검사 5회³⁾ 중 4회를 참석하지 않아 공사관리관의 업무뿐 아니라 건설공사의 문제점 파악 등 발주청의 건설공사 총괄 업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4. 현장 자재정리 등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위 공사의 「공사시방서」 제1장(총칙) 1-3(자재관리) 1.5(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에 따르면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같은 공사시방서 1.21.(공사중 현장 청소 및 폐기물 제거)에 따르면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사의 시공자는 반입자재는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공사구역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1) ○○○(2019.12.24.~현재)

2) 1차(2020.06.29.), 2차(2020.09.15.), 3차(2020.12.16.), 4차(2021.03.23.), 5차(2021.06.08.), 6차(2021.09.09.), 7차(2021.12.07.)

3) 1차분 기성 1차(2020.09.15.), 준공(2020.12.16.), 2차분 준공(2021.04.09.), 3차분 기성 1차(2021.06.08.), 기성 2차(2021.09.09.)

그런데 위 공사의 시공자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품질에 영향을 없도록 자재를 보관하고, 공사구역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그림] “건설자재 현장보관 및 공사구역 현황”과 같이 건설자재 등이 정리정돈 되어 있지 않고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지 않은채로 보관하고 있다.

[그림] 건설자재 현장보관 및 공사구역 현황



건설자재 보관 전경

그 결과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등이 정리 정돈되지 않고 널브러져 있어 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등 발생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①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한 공사비 41,707,000원을 감액 조치하고 (시정)

② 앞으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 등에 따라 공사관리관은 현장에서 실시하는 현장 합동 점검 및 기성·준공검사에 입회하며

「공사시방서」 1-3 등에 따라 반입 자재를 품질에 영향이 없도록 보관하고, 공사구역을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 지방도 재해복구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는 영산강 강변도로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침수 및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하여 2021. 8. 19.부터 2021. 12. 17.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 지방도 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 지방도 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

(단위 : m,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자재			
○○ 지방도 재해복구사업	220	1,859	1,770	89	2021.08.19. ~2022.01.15.	○○건설(주) (○○○)	

자료 :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사업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표 2] “○○○○ 지방도 건설사업 관리용역 현황”과 같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중에 있다.

[표 2] ○○○○ 지방도 건설사업관리용역 현황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사 (대표이사 / 지분율)	비고
○○○○ 지방도 건설사업관리 용역	1,628	2021.08.25. ~2023.08.24.	(주)○○엔지니어링(○○○/60%) (주)○○○○○건축사사무소(○○○/40%)	

자료 :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다 공사감독관 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어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라남도는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또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어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는 2021. 12. 17. 기동감사일 현재 [표 3] “○○ 지방도 재해복구사업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과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물량이 상이하여 총공사비 8,173천원을 감액 설계변경하여야 하는데도 변경하지 않고 있다.

[표 3] ○○ 지방도 재해복구사업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당초		변경		증·감 (b-a)
		수량	공사비(a)	수량	공사비(b)	
계	2건		14,230		6,057	감 8,173
1	역T형 옹벽(H=3.0m) 강관비계 일부 미설치	429㎡	10,750	215㎡	5,375	감 5,375
2	역T형 옹벽(H=3.0m) 스페이스 일부 미설치	870㎡	3,480	165㎡	682	감 2,798

자료 :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주)○○엔지니어링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 계상된 8,173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다.

3.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¹⁾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

- 1)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중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에게 제출해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고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발주청이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결과(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를 판정한 후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의 경우에는 승인서를 건설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라남도는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는 2021. 8. 19.부터 2021. 12. 17. 기동감사일 현재까지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의 적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정성을 검토하지 않아 공사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가져왔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는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설계도서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한 공사비 8,173,000원을 감액 조치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등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안전건설과)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해상재난 시 해상으로부터 육지까지 대피로를 연결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8. 1. 31.부터 2021. 12. 20.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 설치사업 추진 현황”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 설치사업 추진 현황

(단위 : km,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급액	관급지체			
○○ 설치사업	8.32	16,059	9,625	6,434	2018.01.31. ~ 2025.04.29.	(주)○○○○○○○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사업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표 2] “○○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현황”과 같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중에 있다.

[표 2] ○○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사 (대표이사 / 지분율)	비고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987	2018.06.28. ~ 2025.08.13.	(주)○○(○○○/45%) (주)○○○엔지니어링(○○○/35%) (주)○○엔지니어링(○○○/20%)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감독자 등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다 공사감독관 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또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안전건설과)은 2021. 12. 20. 기동감사일 현재 [표 3] “○○사업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과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물량이 상이하여 총공사비 49,701천원을 감액 설계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변경하지 않고 있다.

[표 3] ○○사업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당초		변경		증·감 (b-a)
		수량	공사비(a)	수량	공사비(b)	
계	3건		111,507		61,806	감 49,701
1	준공 표지석 과다계상	6개	92,709	4개	61,806	감 30,903
2	7개 공구 비탈면 녹화시공 모니터링비 불필요	7개	12,595	-	-	감 12,595
3	합성형라멘교 교명주 설치 불필요	4개	6,203	-	-	감 6,203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주)○○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 계상된 49,701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다.

3. 공사관리관 현장 합동 점검 및 기성·준공검사 미참석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11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기술지원기술인은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이 제출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102조 제6항 따르면 발주청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 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12조 제11항에 따르면 공사관리관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등을 위해 공사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 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하고, 기성 및 준공검사를 입회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 공사관리관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기술지원기술인 등과 함께 합동 점검을 수행하고, 기성·준공검사에 입회하여 기성·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준공검사 실시 여부를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에 작성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안전건설과) 공사관리관¹⁾은 2018. 1. 31.부터 2021. 12. 20. 기동감사일 현재까지 현장에서 실시한 합동 점검 9회²⁾ 중 9회 모두를 참석하지 않았고, 기성·준공검사 6회³⁾ 중 6회 모두를 참석하지 않아 공사관리관의 업무뿐 아니라 건설공사의 문제점 파악 등 발주청의 건설공사 총괄업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4. 품질관리자 교육 이수 확인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중급품질관리 대상 사업으로 규모 20m² 이상의 시험실과 중급기술인 1명 이상과 초급기술인 1명 이상

1) ○○○(2018.01.31.~2019.01.31.), ○○○(2019.02.01.~2020.01.31.), ○○○(2020.02.01.~2020.06.30.),
○○○(2020.07.01.~2020.09.30.), ○○○(2020.10.01.~2021.02.02.), ○○○(2021.02.03.~현재)

2) 1차(2018.12.27.), 2차(2019.03.26.), 3차(2019.06.26.), 4차(2019.09.24.), 5차(2019.12.09.), 6차(2020.03.31.),
7차(2020.06.24.), 8차(2020.09.18.), 9차(2020.12.16.)

3) 1차분 준공(2019.06.21.), 2차분 기성 1차(2019.10.24.), 기성 2차(2019.10.24.), 준공(2019.05.08.),
3차분 기성 1차(2020.12.16.), 준공(2021.05.04.)

등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는 교육(기본교육 35시간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계속교육 35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기술인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적격한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되어 건설공사 준공까지 품질관리 등을 하도록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 책임기술자 ○○○)은 “○○사업”에 2021. 2. 17. 변경 배치된 중급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이 품질관리 기본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변경 선임된 품질관리자가 적정한 것으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21. 2. 17. 발주청에 품질관리자 변경 보고를 하였다.

또한 함평군(안전건설과)은 변경 선임된 품질관리 기술인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부적격자임에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 보고하였는데도 2021. 12. 20. 기동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함평군(안전건설과)은 2021. 12. 20. 기동감사일 현재까지 당초 선임된 품질관리 기술인이 2021. 11. 30. 퇴사하고 새로운 품질관리기술인 선임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품질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품질관리 기술인 교육 이수 여부 확인 업무를 태만히 하여 공사의 품질을 신뢰하지 못할 우려를 가져왔다.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 등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새로운 품질 관리기술인 변경 신고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함평군수는 품질관리기술인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물량 상이한 공사비 49,701,000원을 감액 조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② 앞으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 등에 따라 공사관리관은 현장 합동 점검 및 기성·준공검사 입회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 개발사업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여수시(관광과)

내 용

1. 업무개요

여수시는 한·중의 화합과 동북아 평화를 상징하는 장소로서 의미를 되살릴 수 있도록 묘도지역 성역화를 도모하고 국내 및 중국 관광객 유치에 기여 하기 위하여 2019. 9. 24.부터 2021. 12. 21.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 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 개발사업 추진 현황

(단위 : m²,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지체			
○○개발사업	29,534	5,765	4,081	1,684	2019.09.24 ~ 2022.09.23	○○건설(주) (○○○)	

자료 : 여수시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다 공사감독관 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

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여수시는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여수시(관광과)는 2021. 12. 21. 기동감사일 현재 [표 2] “○○ 개발사업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과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물량이 상이하여 총공사비 7,376천원을 감액 설계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변경하지 않고 있다.

[표 2] ○○ 개발사업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당초		변경		증·감 (b-a)
		수량	공사비(a)	수량	공사비(b)	
계	3건		19,861		14,485	감 7,376
1	토공 층따기 미실시	1,969㎡	2,878	-	-	감 2,878
2	구조물 벽체 스페이서 미설치	318㎡	1,937	-	-	감 1,937
3	세륜세차시설 미정산	18개월	15,046	14개월	14,485	감 2,561

자료 : 여수시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여수시장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여수시는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물량이 상이한 공사비 7,376,000원을 설계변경 금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 연구시설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남개발공사(건축안전사업처)

내 용

1. 업무개요

전남개발공사는 고부가 가치 수산자원 인공종자 생산연구 및 에너지 절감 수산자원 생산시설 건립으로 수산양식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1. 5. 10.부터 2021. 12. 22.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연구소 연구시설 건립공사 추진 현황”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연구시설 건립공사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자재			
○○연구시설 건립공사	522㎡	1,026	881	145	2021.05.10. ~2022.02.28.	○○건설(주) (○○○)	

자료 : 전남개발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다 공사감독관 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

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남개발공사는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전남개발공사(건축안전사업처)는 2021. 12. 22. 기동감사일 현재 [표 2] “○○연구시설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과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총공사비 3,608천원을 감액 설계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변경하지 않고 있다.

[표 2] ○○연구시설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당초		변경		증·감 (b-a)
		수량	공사비(a)	수량	공사비(b)	
계	3건		29,898		26,290	감 3,608
1	역L형 옹벽 기초 전단키 부분 유로폼 미설치	534.2㎡	22,363	469.7㎡	19,657	감 2,706
2	역L형 옹벽 기초다짐 진동롤러(10톤) 일부 미사용	191.8㎡	1,804	191.8㎡	1,199	감 605
3	에너지동 시스템비계 발판 2열 중 1열 미설치	281㎡	5,731	281㎡	5,434	감 297

자료 : 전남개발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3. 옥상광장 설치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¹⁾ 등의 주위에는 높이 120c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전남개발공사는 옥상광장에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연구관리동 옥상에 높이 120c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전남개발공사(건축안전사업처)는 2021. 12. 22. 기동감사일 현재 연구관리동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그림 1] “연구관리동 옥상 난간 시공 사진”과 같이 옥상 난간을 50cm 높이로 시공하여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높이보다 70cm 낮게 시공하였다.

[그림 1] 연구관리동 옥상 난간 시공 사진



그로 인하여 건축법령에 위반되게 옥상 난간을 설치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4. 철골공사 시공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1)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6.3.5.에 철골공사 완공 후 도장이 필요한 부재에 생긴 녹을 압축공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강입자 등을 세차게 부딪쳐서 제거하고 청정하게 한 후 도막공사를 시행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남개발공사는 시공 완료된 철골 부재의 녹을 제거한 후 적정한 도막공사를 시행하도록 공사감독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전남개발공사(건축안전사업처)는 2021. 12. 22. 기동감사일 현재 에너지동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철골공사 감독을 소홀히 하여 [그림 2] “에너지동 철골 공사현장 사진”과 같이 철골 양카볼트에 녹이 발생하여 방치되어 있어 건축물의 구조체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데도 구조 안전검토 및 보완시공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그림 2] 에너지동 철골 공사현장 사진



그로 인하여 건축공사 현장의 부실시공 예방을 소홀히 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품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남개발공사는 연구관리동의 옥상은 설계 시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외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난간 설치 비대상으로 판단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단서 조항에 따르면 건물 구조적으로 출입이 불가능한 장소에 한해 높이 120cm 이상의 난간 설치를 제외한다고 한정되어 있어 옥상광장 출입을 위해 출입문이 설치된 연구관리동 옥상은 설치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전남개발공사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과다 반영된 3,608,000원을 감액 설계변경하고, 연구관리동 옥상광장에 높이 120c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설계변경하며, 녹이 발생한 철골 양카볼트는 녹을 제거 후 적정한 도막공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도로 개설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장성군(문화관광과)

내 용

1. 업무개요

장성군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경관개선 및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사 정비사업”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을 득한 후 보조사업자로 ○○사(주지 ○○)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장성군은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 1. 29. 보조사업자인 ○○사(주지 ○○)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조건을 부여 후 770,000천원을 교부 결정하였고, ○○사(주지 ○○)는 문화재 실측설계 업체인 (주)○○건축사사무소(대표 ○○○)와 2019. 2. 15. 용역비 59,600천원에 계약 체결하여 2019. 2. 18.부터 2019. 12. 19.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사(주지 ○○)는 2020. 10. 13.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2020. 11. 24. 전남도로부터 설계 승인을 받아 2020. 12. 22.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 3.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지침에 따르면 사업수행자 선정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에서는 수행능력, 수행실적, 제시가격,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한 사항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등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는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장성군으로부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주지 ○○)는 2020. 12. 18. 사업시행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표 1] “○○도로개설사업 추진 현황”과 같이 (주)○○문화재(대표 ○○○)를 ”○○도로개설 사업“ 사업수행자로 선정하고, 장성군(문화관광과)은 위 사업의 검측을 위한 감리를 (주)○○건축사사무소(대표 ○○○)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도로개설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약 자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량
시공	(주)○○문화재(○○○) (기존: (주)○○문화재 ○○○)	2020.12.22. ~2021.12.31.	710,000	도로포장 471m
감리	(주)○○건축사사무소 (대표 ○○○)	2020.12.22. ~2021.12.31.	19,980	문화재 비상주 검측감리 1석

자료 : 장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사업수행자인 (주)○○문화재(대표 ○○○)와 감리자인 (주)○○건축사사무소(대표 ○○○)는 설계도면 및 공사 지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21. 12. 9. 기동감사일 현재 “○○도로개설사업” 설계도서와 시공 실태를 살펴본 결과 보조사업자인 ○○사(주지 ○○)는 흙콘크리트 포장 672㎡ 시공 중 No. 17~19 구간에서 설계 시 조사되지 않은 한전, 통신, 상수도 관로

등 지하매설물이 발견되자 두께 15cm(당초 20cm)로 변경하여 시공하도록 시공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이로 인한 공사비 차액 2,162천원을 감액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앞으로 시공 예정인 ○○○ 주변의 흙콘크리트 잔여구간(673m²)도 지하매설물 위치를 재확인하여 포장두께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계곡 옆 산책로 조성(구간 No. 8~12)구간 33m에 보행자 및 사찰신도 등의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 반영 등을 재검토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설계를 변경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설계변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림] 흙콘크리트 포장 두께 미확보 및 안전시설 추가 필요구간 현황



이로 인하여 장성군(문화관광과)과 ○○사는 기시공구간의 사업비 2,162천원의 사업비 감액과 추가 설계변경 검토 등을 실시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우려가 발생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장성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장성군수는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과다계상된 2,162,000원을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 주변의 흙 콘크리트 포장은 지하 매설물 위치 재확인 등 포장 두께를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 거점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경제산업과, 해양수산과)

내 용

1. 업무개요

해남군은 고부가가치 수산식품개발의 연구·유통 및 6차 산업 등 수출 선도형 거점단지 조성을 위하여 2018. 7. 30. 보조사업자 ○○(대표 ○○○)에게 보조금 15,000백만원(국비 7,500 군비 4,500 자담 3,000)을 지원하여, ○○에서 2020. 12. 29.부터 2021. 12. 13.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 거점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 거점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단위 : m²,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자재			
○○ 거점단지 조성사업	7,565	7,952	5,600	2,352	2020.12.29. ~ 2021.12.29.	(주)○○ (○○○)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표 2] “○○ 거점단지 조성 상주감리용역”과 같이 상주감리용역을 시행중에 있다.

[표 2] ○○ 거점단지 조성 상주감리용역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사 (대표이사 / 지분율)	비고
○○ 거점단지 조성 상주감리용역	196	2020.12.29. ~ 2021.12.29.	(주)○○엔지니어링사무소 (○○○ / 100%)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1. 보조사업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조에 따르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보조사업자인 ○○으로부터 최초 보조금 교부연도의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해남군(해양수산과)은 보조사업자에게 2019. 4월 보조금 4,200백만원을 교부하고, 2020. 2. 28.까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2020. 5월 3,785백만원, 2020. 6월 4,015백만원을 각각 교부하고 2021. 2. 28.까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다가 2021. 7월에서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1회 제출 받았다.

또한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지 않고 제출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3. 산업단지 입주계약 업무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입주자격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로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입주계약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에서 제출한 입주계약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살펴보면 전복 반가공 및 썰은 전복 반가공 등의 생산공정에 세척 공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업용수로 일 50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염분을 함유한 다량의 폐수를 배출하는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계획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 ○○ ○○○○단지 입주를 위해 입주계약 신청서 등이 제출되면 해당 사업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지를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하여 입주계약 승인을 결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해남군(경제산업과)은 ○○이 2019. 1. 7. ○○ ○○ ○○○○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다량의 폐수 배출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지 않고 입주계약을 승인하였다.

4.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철골공사 시공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1.1.에 콘크리트의 타설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전되어 소요강도 및 내구성을 가지며, 유해한 타설 결함부가 없는 구조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2.6.에 콘크리트 다짐은 부어넣기 중에 적절한 방법으로 철근이나 매설물 주위 및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철저히 다지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짐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6.3.5.에 철골공사 완공후 도장을 요하는 부재에 생긴 녹을 압축공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강 입자 등을 세차게 부딪쳐서 제거하고 청정하게 한 후 도막공사를 시행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콘크리트 타설 시공 시 진동다짐기 등을 활용하여 다짐을 철저히 하여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완료 된 철골 부재에 대해서는 녹을 제거후 적정한 도막공사를 시행하도록 공사감독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보조사업자는 “○○거점단지 조성사업”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철골공사 감독을 소홀히 하여 [그림] “○○거점단지 조성사업 현장 사진”과 같이 재료분리 현상 발생 및 철골 앙카볼트에 녹이 발생하여 방치되어 있는 등 건축물의 구조체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데도 2021. 12. 13. 기동감사일 현재까지도 구조안전 검토 및 보완시공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그림] ○○ 거점단지 조성사업 현장 사진



그로 인하여 건축공사 현장의 부실 시공 예방을 소홀히 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품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다 공사감독관 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보조사업자는 2021. 12. 13. 기동감사일 현재 토목공사에 반영된 지

반치환공사에서 현장제작 395m³과 골재다짐 390m³(3회)를 실시하지 않고 시공하여 공사비 27,573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6.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승인 업무처리 등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에 따르면 연면적이 660m²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결과(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게 되어 있고,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하루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기술인이 발주의 승낙을 받지 않고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연면적이 660m²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제출된 품질시험계획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규모 20㎡ 이상의 시험실과 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했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수행 건설기술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하루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자의 승낙을 받고 이탈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보조사업자는 2020. 12. 29.부터 2021. 12. 13. 기동감사일 현재까지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지 않고, 레미콘 등 품질시험을 시행하지 않아 공사비 29,223천원을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기본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부적격한 기술자를 배치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2021. 12. 13. 기동감사일 현재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수행 건설기술인으로 선임된 ○○○는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등을 준수하고 부실시공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품질관리계획을 검토·승인하지 않고,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수행 건설기술인 관리자를 상주시키지 않는 등 품질시험계획 업무를 태만히 하여 공사의 품질을 신뢰하지 못할 우려를 가져왔다.

7.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¹⁾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

1)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에게 제출해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고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발주청이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의 검토결과(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를 판정한 후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의 경우에는 승인서를 건설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보조사업자는 2020. 12. 29.부터 2021. 12. 13. 기동감사일 현재까지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향타 및 향받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아 공사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가져왔다.

8. 건설폐기물 보관 및 현장자재 정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위 공사의 「건축시방서」 A17010(폐기물 처리공사 일반) 1.4.(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다. 보관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은 흘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건축시방서 A01020(현장관리) 1.13(정리, 정비, 청소)에 따르면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사의 시공자는 건설폐기물을 흘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재료 등의 정리정돈 등을 철저히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공사의 시공자는 건설폐기물을 흘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그림 1] “건설폐기물 현장보관 현황”과 같이 건설폐기물에 덮개를 씌우지 않은채로 보관하고 있다.

[그림] 건설폐기물 현장보관 현황



건설폐기물 보관 전경

또한 위 공사의 시공자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재료 등의 정리정돈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그림 2] “건설자재 현장보관 현황”과 같이 건설자재 등을 정리정돈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지 않은채로 보관하고 있다.

[그림] 건설자재 현장보관 현황



건설자재 보관 전경

그 결과 건설폐기물은 바람이 불면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등 주변 환경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등이 정리 정돈되지 않고 널브러져 있어 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등 발생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산업단지 입주계약 업무 추진 부적정에 대하여 ○ ○ ○ ○ ○ ○ ○ 단지 분양입주 계약시 용지 분양·입주계약서 제6조(분양용지의 사용)에 분양용지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조성사업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지구단위 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상의 각종 규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25조(환경의 보전 등)에 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한 후 그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제2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에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 기타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계획서상 일 50톤의 폐수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정확히 계산된 양은 아니고, 저감 시설이나 추가 시설 설치를 통해 물과 회석하여 배출하도록 안내하여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남군 ○○이 공장을 착공하여 건설 중에 있으므로 염분성분 제거 설비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2018. 5. 25. 해남군에서 공고한 ○○ ○○ ○○○○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공고문(해남군 공고 제2018-950호)에 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제출서류에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 사업계획서, 환경성 검토요구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해남군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환경성 검토요구서를 제출받아 환경관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였다면 배출시설 설치 대상인지를 알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해남군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① 보조금 교부연도의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남군 ○○으로부터 환경성 검토요구서를 제출받아 환경관련 배출시설 설치 대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며,

재료분리가 발생한 철근콘크리트 구조체 및 녹이 발생한 철골 양카볼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시공을 하고,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물량이 상이한 공사비 및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품질시험비 등 56,796,000원을 감액 설계변경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등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검토 후 승인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등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수행 건설기술인으로 선임된 이후 현장에 상주하지 않은 ○○○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시정)

② 앞으로 현장에 반입된 건설자재 관리 및 공사 중에 발생한 건설폐기물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